

新出土 文字資料의 饗宴

- ❖ 일시 : 2022.1.21.(금) 13:00~17:20
-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
- ❖ 주최 : 한국목간학회·국립중앙박물관

일정

13:10~13:20	인사말 및 축사	한국목간학회장
13:20~14:10	대구 팔거산성 출토 목간 소개	전경효(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4:10~14:40	몽촌토성 집수지 출토 목간	박중균(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14:40~15:10	경주 傳항복사지 출토 문자자료	김희철(성림문화재연구원)
15:10~15:30	신년휘호 및 휴식	韻齋 李承雨
15:30~16:00	여주 파사성 출토 목간	김정인(한성문화재연구원)
16:00~16:30	태안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양기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30~17:2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시신갈개 부착 문서 소개	권영우·이태희(국립중앙박물관)
17:20~17:30	장내정리	
17:30~17:50	한국목간학회 2022년 정기총회	

목차

대구 팔거산성 출토 목간 소개	5
전경효(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몽촌토성 집수지 출토 목간	23
박중균(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경주 傳황복사지 출토 문자자료	35
김희철(성림문화재연구원)	
여주 파사성 출토 목간	53
김정인(한성문화재연구원)	
태안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69
양기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시신갈래 부착 문서 소개	83
권영우·이태희(국립중앙박물관)	

대구 팔거산성 출토 목간 소개

전경효(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대구 팔거산성 출토 목간 소개

전경호(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목차

1. 머리말
 2. 목간의 형태와 판독
 3. 목간의 내용과 특징
 4. 맺음말
-

1. 머리말

대구 팔거산성 목간 출토 소식은 지난 4월 28일에 공식 발표되었다.¹⁾ 그 이전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팔거산성 조사 기관인 (재)화랑문화재연구원과 협력하여 유물 인수 및 사진 촬영, 판독회 등을 진행하였다.²⁾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4월 28일에 열린 1차 현장설명회에서 1차로 출토된 목간 11점의 내용 및 성격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후 5점의 목간이 추가로 출토되었는데 이들 목간 사진은 6월 28일에 열린 2차 현장설명회 자료집에 일부 공개되었다.³⁾

이 글은 대구 팔거산성에서 출토된 전체 목간에 대한 소개와 기초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⁴⁾ 이를 위해 (재)화랑문화재연구원측에서 제공한 조사 자료집 및 사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촬영한 목간 컬러 및 적외선 사진 등을 활용하여 유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목간의 형태 및 판독 그리고 내용상 특징을 설명한다. 그리고 목간의 특징을 살펴본 후 출토지인 팔거산성의 위상과 역할을 간단하게 논의할 것이다.

2. 목간의 형태와 판독

목간이 출토된 대구 팔거산성은 대구 북구 노곡동 산1-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산성 인근에는 동천동 취락유적⁵⁾, 팔달동유적⁶⁾, 칠곡 생활유적⁷⁾, 구암동 고분군⁸⁾ 등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나 고분 유적이 조사되었다. 산성에 대한 지표조사는 1999년에 대구대

-
- 1) 문화재청 보도자료, 「대구 팔거산성에서 대구 최초로 신라 목간 출토」(2021.04.28.)
 -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담당자들이 2021년 3월 24일(수)에 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출토 유구를 살펴보고, 3월 25일(목)에 경주에 위치한 (재)화랑문화재연구원 사무실에서 유물을 인수·인계받아 신라월성 학술조사단 수장고에 보관하였다. 이후 세척 및 사진 촬영을 진행한 후 4월 2일(금)에 1차 판독회(자문위원 : 주보돈, 이수훈, 김재홍, 윤선태, 김상현), 4월 23일(금)에 2차 판독회(주보돈, 이수훈, 김재홍, 윤선태, 홍승우, 윤용구, 방국화)를 개최하여 목간 내용과 특징을 논의하였다.
 - 3) 재단법인 화랑문화재연구원, 2021, 『대구 팔거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자료집』.
 - 4) 6월 28일 2차 설명회 이후 7월 16일에는 한국목간학회 하계세미나가 열렸고, 9월 15일에는 대구 팔거산성 조사 성과와 의미라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글은 이러한 행사에서 발표된 글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5) (財)嶺南文化材研究院, 2002, 『大邱 東川洞 聚落遺蹟 본문 1·본문 2·사진』.
 - 6) 慶北大學校博物館, 1993, 『大邱 八達洞 遺蹟』; (財)嶺南文化材研究院, 2000, 『大邱 八達洞遺蹟 I』.
 - 7) 慶北大學校博物館, 2006, 『大邱 漆谷 生活遺蹟』. 특히 이 유적은 구암동고분군과 팔거산성이 위치한 함지산의 서쪽 아래에 있으며 5~6세기 무렵에 조성되고 사용된 생활유적이므로 거주지, 고분, 산성이라는 하나의 유적군으로 볼 여지도 있다.
 - 8) 嶺南大學校博物館, 1978, 『鳩岩洞 古墳 發掘 調査 報告』; (財)嶺南文化材研究院, 2018, 『大邱 鳩岩洞1號墳』.

학교 박물관,⁹⁾ 2015년에는 (재)영남문화재연구원 등이 수행하였으며,¹⁰⁾ 2018년에는 (재)화랑문화재연구원이 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시굴 조사 결과 산성의 수구, 치, 문지 그리고 건물지와 추정집수지, 축대, 성벽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석축 7기, 집수지 2기, 계단지, 배수로, 수구 등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팔거산성 출토되었다고 알려진 목간은 총 16점이다. 이들 목간은 추정 집수지 2호에서 출토되었는데, 그 토층은 위쪽부터 4개의 토층으로 구성되었다. I 층은 집수지 2호 폐기 이후 함몰된 지형을 평탄화하기 위해 조성한 성토층이며, II 층은 집수지 폐기 이후 일정기간 방치되면서 생성된 자연퇴적층이다. 또한 III 층은 목재 구조물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집수지 가장자리의 토사가 유입된 층으로 다량의 함석이 들어 있다. IV 층은 목재 구조물 내부에 퇴적된 회청색과 회색 泥土層이다. 목간은 이 토층에서 단경호, 웅(甕), 1단 투창 고배 각부편과 함께 출토되었다. 특히 I 층에서 통일 무렵부터 제작된 인화문토기(印花紋土器) 조각이 발견되었는데¹¹⁾ 이를 통해 통일 이전인 7세기 중반을 전후한 무렵 집수지가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정 집수지 2호 전경



추정 집수지 2호 토층



추정 집수지 2호의 목간 출토 상황(4호)¹²⁾

9) 大邱大學校博物館, 1999, 『大邱 八莒山城 地表調査報告書』.

10) 이 시점까지 진행된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 조사 결과를 사적 지적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영남문화재연구원·대구 북구청, 2016, 「팔거산성의 구조적 특성과 학술적 가치」 『구암동 고분군·팔거산성의 문화유산 가치와 활용 방안 학술대회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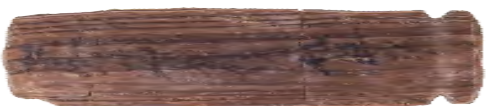
11) (재)화랑문화재연구원, 2021, 「대구 팔거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자료집」, 11~12쪽.

12) 이상의 사진은 (재)화랑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며, 「팔거산성 유구 배치도」는 배치 상황

9

한편 11점의 목간 가운데 목간 파편으로 추정되는 11호를¹³⁾ 제외하면 대부분 세로가 긴 직사각형 모양이다. 이들 목간 가운데 1호, 8호 목간은 아래쪽¹⁴⁾, 3호, 9호 목간은 위쪽이 파손되었고, 나머지 목간도 옆이나 아래쪽 흠 주변에 파손된 흔적이 있어 완전한 형태의 목간은 없다. 아마도 사용 도중 또는 버려지기 직전에 훼손되었거나 묻힌 이후 흠의 압력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원래의 모습에서 변형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출토된 목간은 지금보다 더 길었거나 넓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팔거산성 출토 목간 목록>

연번	사진	크기(cm)	출토위치	비고
1		길이 16.2 너비 5.5 두께 1.0	추정 집수지 (IV층)	
2		길이 22.0 너비 2.3 두께 1.1		
3		길이 22.8 너비 2.5 두께 0.4		
4		길이 15.2 너비 3.6 두께 0.7		
5		길이 20.5 너비 2.8 두께 0.5		
6		길이 18.1 너비 3.3 두께 0.9		
7		길이 23.3 너비 2.4 두께 0.8		
8		길이 22.4 너비 2.4 두께 0.6		
9		길이 18.7 너비 3.5 두께 1.3		

13) 최초에는 4-1호로 알려졌으나 (재)화랑문화재연구원의 유물 분류 결과에 따라 11호로 수정한다.

14) 위쪽과 아래쪽의 기준은 글자가 쓰인 방향이다.

10		길이 16.3 너비 2.2 두께 0.7		
11		길이 4.3 너비 2.7 두께 0.5		
12		길이 22.8 너비 3.0 두께 0.5		
13		길이 17.3 너비 2.1 두께 0.5		
14		길이 18.1 너비 1.3 두께 0.7		
15		길이 19.2 너비 3.2 두께 0.9		
16		길이 27.5 너비 2.9 두께 1.1		

또한 이번에 출토된 목간 16점 가운데 12점은 그 아래쪽을 깎아서 만든 흔적이 있다.¹⁵⁾ 이러한 형태의 목간은 일반적으로 물품에 매달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지금의 물품 送狀과 같은 역할을 했다. 특히 3호와 7호, 16호 목간에는 끈을 묶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흔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밖에 목간 조각으로 추정되는 11호를 제외하고 1호와 8호 목간은 아래쪽, 15호 목간은 위아래 양쪽이 파손되어 원래 형태를 알 수 없다. 다만 1호 목간은 다른 목간에 비해 너비가 넓으므로 문서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팔거 산성 출토 목간은 형태로 본다면 물품과 연관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추정된다.¹⁶⁾

목간의 형태와 함께 거기에 남겨진 글자를 통해서도 그 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 글자가 있는 목간은 7점인데, 모두 1개의 면에만 글자가 있다. 또한 글자가 없는 목간이라도 원래부터 쓰지 않았을 경우, 글자가 있었으나 지워졌을 경우, 쓰기 위한 용도로 남겨두었다가 버려졌을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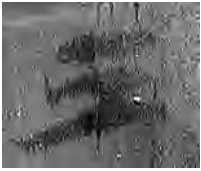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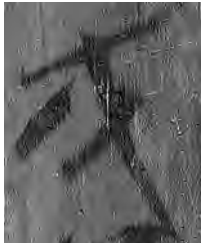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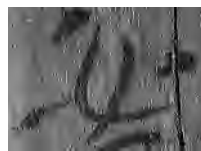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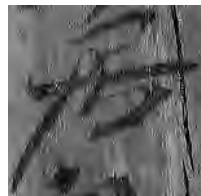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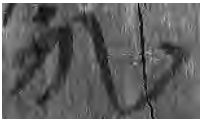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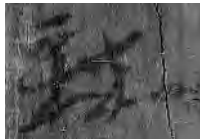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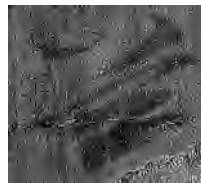
목간의 내용과 그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남아있는 글자나 표현도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1호 목간에는 9글자, 2호 목간에는 2글자, 3호 목간에는 12글자, 4호 목간에는 10글자, 6호 목간에는 11개의 글자 또는 기호, 7호 목간 13

15) 파손된 다른 목간도 있으므로 원래는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16) 다만 물품용으로 사용했다가 다른 용도 즉 문서 작성 등의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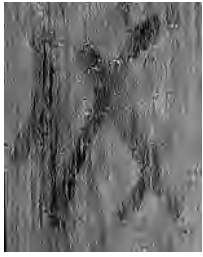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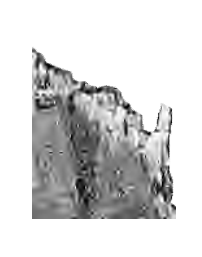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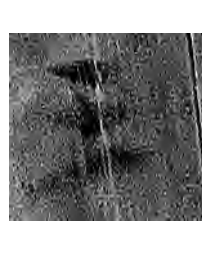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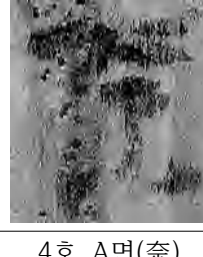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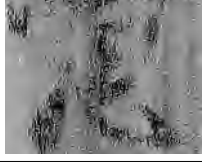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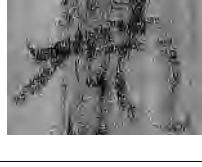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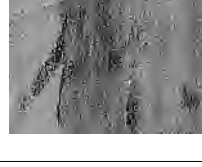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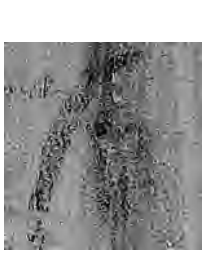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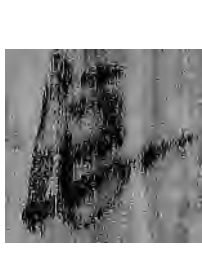
	
목간 파손 부분(1호 아래쪽)	
	목간에 끈을 묶은 흔적 (사각형 표시, 3호 아래쪽)
목간 파손 부분(3호 위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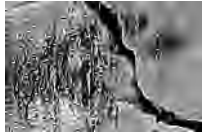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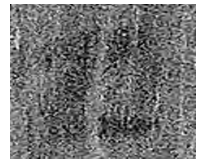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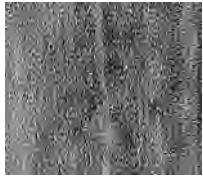
개의 글자 또는 기호, 9호 목간에는 7개의 글자 또는 기호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글자 판독표와¹⁷⁾ 판독문은 다음과 같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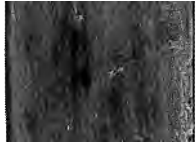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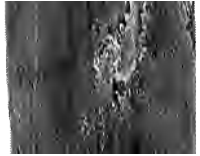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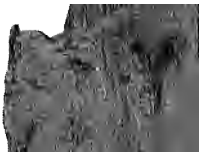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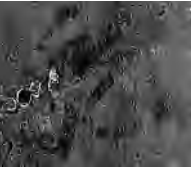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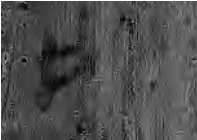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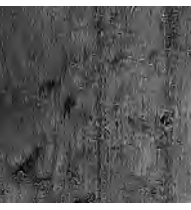
				
1호 A면(壬)	1호 A면(戌)	1호 A면(年)	1호 A면(安)	1호 A면(居)
				
1호 A면(礼)	1호 A면(甘)	1호 A면(麻)	1호 A면(谷)	2호 A면(耽)

17) 글자 판독표에는 글자가 있는 면(A면 등)과 판독되는 글자를 괄호 안에 표시했다. 또한 반복되는 글자나 표현이 있을 경우 해당 글자나 표현 옆에 숫자((1) 등)를 넣었다. 이 밖에 판독에 논란이 있는 일부 글자의 경우 출토 직후 글자 사진을 추가하였다.

18) '口'는 글자로 추정되지만 알 수 없는 글자. '玠', '奴' 등은 각각 玠와 奴로 추정되는 글자를 표시한 것이다. 또한 '×'는 파손된 부분을 표시한 기호이다. 이 밖에 일부 글자의 경우 (재)화랑문화재연구원에서 제공한 현장 출토 직후 촬영한 컬러사진에서 글자를 추출하여 적외선 사진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글자는 3호 A면 7번째 글자 玠 추정 글자, 7호 A면 9번째 麦 추정 글자, 10번째 易, 11~12번째 大豆 추정 글자이다.

				
2호 A면(伐)	3호 A면(卯 추정)	3호 A면(年)	3호 A면(王)	3호 A면(私)
				
3호 A면(所)	3호 A면(利)	3호 A면(玕 추정)	3호 A면(玕 추정)	3호 A면(翳 추정)
				
3호 A면(𠂔(1))	3호 A면(𠂔(2))	3호 A면(麦)	3호 A면(石)	4호 A면(奈)
				
4호 A면(奴 추정)	4호 A면(冤 추정)	4호 A면(積)	4호 A면(作)	4호 A면(稻)
				
4호 A면(石)	4호 A면(食 추정)	4호 A면(軍)	6호 A면(丙)	6호 A면(寅)

				
6호 A면(年)	6호 A면(王 추정)	6호 A면(私 추정)	6호 A면(□(1))	6호 A면(分 추정)
				
6호 A면(□(2))	6호 A면(□(3))	6호 A면(休)	6호 A면(.)	7호 A면(丙)
				
7호 A면(寅)	7호 A면(年)	7호 A면(次)	7호 A면(谷)	7호 A면(鄒)
				
7호 A면 (= 또는 乙)	7호 A면(下)	7호 A면(麦)	7호 A면(麦)	7호 A면(易)
				
7호 A면(易)	7호 A면 (大豆 추정)	7호 A면 (大豆 추정)	7호 A면(石)	9호 A면(卅)
				
9호 A면(城 추정)	9호 A면(□(1))	9호 A면(玕 추정)	9호 A면(□(2))	9호 A면(□(3))

				
9호 A면(.)	14호 A면(本)	14호 A면(波)	14호 A면(部)	14호 A면(□(1))
				
14호 A면(□(2))	14호 A면(村)	14호 A면(□(3))	14호 A면(□(4))	14호 A면(□(5))
				
14호 A면(□(6))	14호 B면(米)	14호 B면(一)	14호 B면(石)	14호 B면(私)
				
15호 A면(□(1))	15호 A면(村)	15호 A면(王)	15호 A면(私)	15호 A면 (禾 또는 尔 또는 示)
				
15호 A면(□(2))	15호 A면(□(3))	15호 A면(□(4))	15호 A면(之)	16호 A면(安)
				
16호 A면(居)	16호 A면(利)	16호 A면(干)	16호 A면(支)	16호 A면(私)

				
16호 A면(男)	16호 A면(谷)	16호 A면(村)	16호 A면(支)	16호 A면(之)

(1) 1호 목간

(A면) 壬戌年安居礼甘麻谷×

(B면) 글자 없음

(2) 2호 목간

(A면) 孰伐

(B면) 글자 없음

(3) 3호 목간

(A면) ×[卯]¹⁹年王私所利[玠]習□²⁰□²¹麦石

(B면) 글자 없음

(4) 4호 목간

(A면) 奈[奴][冤]²²積作稻石伐[食]²³軍

(B면) 글자 없음

(5) 6호 목간

(A면) 丙寅年[王][私]□²⁴[分]□²⁵□²⁶休.

(B면) 글자 없음

(6) 7호 목간

19) 乙卯 또는 丁卯로 추정

20) ‘走’ 또는 ‘吏’

21) ‘伐’ 또는 ‘氏’

22) 또는 ‘惠’

23) 또는 ‘直’

24) 또는 ‘二’

25) 또는 ‘麻’

26) 또는 ‘伐’

(A면) ×丙寅年次谷鄒⁼²⁷⁾下麦易大[豆]石

(B면) 글자 없음

(7) 9호 목간

(A면) ×추²⁸⁾[城]²⁹⁾ □[玕] □□.

(B면) 글자 없음

(8) 14호 목간

(A면) 추波部 □□村□□□□

(B면) 米一石私³⁰⁾

(9) 15호 목간

(A면) ×□村王私禾³¹⁾□□□[之]×

(B면) 글자 없음

(10) 16호 목간

(A면) 安居利干支³²⁾ 私 男³³⁾谷村支之

(B면) 글자 없음

3. 목간의 내용과 특징

팔거산성 출토 목간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작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干支, 麦, 稻, 米 등의 곡식, 下麦과 王私라는 표현, ‘=’와 ‘.’ 등의 기호이다. 이들 표현은 팔거산성 목간이 가지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목간에는 壬戌年, 丙寅年 그리고 ‘□年’이라는 간지로 추정되는 것이 등장한다. 간지는 전체 목간 가운데 4점에서 등장한다.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 90여점 중에 간지가 완전히 남아 있는 경우,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당나라 年號가 남아 있는 경우를 모두 합치면 대략 8점 정도이다. 또한 경주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목간 130여점 가운데 간지가 완전한 목간은 1점,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이 2점 등으로 3점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에 출토된 목간과 비슷한 입지나 환경에서 출토된 경남 함안 성산산성 목간은 전체 245점 중 1점에서 간지가 나왔다. 그러므로 팔거산성 목간은 간지가 나오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27) 중복되는 글자를 표시하는 부호로 사용하였음. ‘乙’로 읽을 여지도 있음.

28) 또는 ‘六十’

29) ‘伐’ 또는 ‘代’

30) 마지막 획이 우측면으로 넘어가서 아래로 그어짐.

31) ‘尔’ 또는 ‘示’

32) ‘干支’ 두 글자를 다른 글자에 비해 우측에 맞추어 작게 붙여서 씀.

33) ‘日刀’로 볼 가능성도 있음.

팔거산성 목간에 등장하는 壬戌年과 丙寅年은 각각 602년과 606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추정 목곽고가 통일 이전인 7세기 중반 무렵 폐기된 것으로 여겨지며, 그곳에서 출토된 토기의 제작연대가 대략 6세기 중반 무렵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⁴⁾ 다만 간지만 나오고 月이나 日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장차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목간에는 麦, 稻, 米 등의 곡식도 등장한다. 경주 월성해자나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에서도 이들 곡물 이름이 등장한다. 그런데 보리의 경우 팔거산성 7호 목간에서는 下麦, 경남 함안의 성산산성 목간에서는 ‘~城下麦’이라 하였다. 특히 ‘~城下麦’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보리를 보내온 지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팔거산성 목간의 경우 기호로 추정되는 표현이 下麦 바로 앞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성산산성 목간과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次谷이라는 지명이 下麦 앞에 나오므로 성산산성 목간처럼 ‘地名+下麦’이라는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팔거산성 목간은 그 형태는 물론 곡물이 등장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물품 관련 목간임이 드러난다.³⁵⁾

한편 王私는 표현이 팔거산성 3호 목간에 나온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성산산성 목간에는 王松鳥多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³⁶⁾ 이는 팔거산성의 왕사도 마찬가지지만, 주목할 점은 私와 松의 판독 문제이다. 그런데 2011년에 발간된 한국목간자전에 의하면 성산산성에 등장하는 王松은 王私로 보았다. 하지만 2017년에 성산산성 목간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한국의 고대 목간Ⅱ에 의하면, 가야1614, 김해1269는 松으로 판독했다.

私와 松의 서체를 字典과 비교하면 팔거산성 3호와 가야 56의 경우 우변의 형태로 보았을 때 私가 확실하다. 다만 가야1614는 松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② 사(私)의 좌변과 ① 사(私)의 우변이 합쳐진 형태로 여겨진다. 또한 김해1269는 우변이 ② 私와 비슷하므로 私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산산성 출토 목간 판독 가운데 일부는 팔거산성 출토 목간을 근거로 수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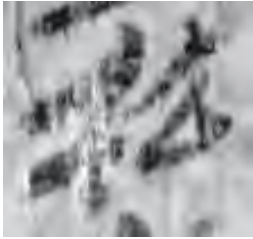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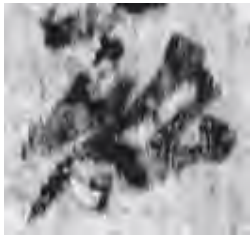
출토 목간의 서체		서체 사전 ³⁷⁾	
			
팔거산성 3호(私)	성산산성 가야56(私)	① 사(私)	② 사(私)

34) 이보다 이른 시기의 토기도 일부 출토된다는 점에서 542년과 546년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토기 및 추정 목곽고의 사용기간을 고려하면 목간의 제작과 폐기는 그보다 늦은 시기였다고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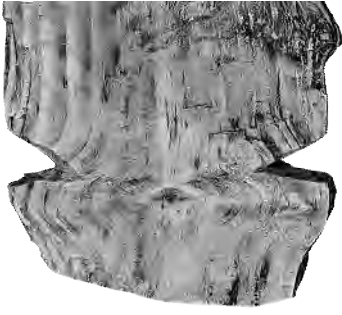
35) 곡물이 등장한다는 점을 목간의 제작 시점과 함께 고려하면 제작 시점은 곡물의 수확 이후일 것이다. 그렇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일 가능성이 크다.

36) 이를 왕실 직할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橋本繁, 2018, 「동아시아 세계 속 한국목간의 위상 - 신라 <울령>과 함안 성산산성목간」 『簡牘 자료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사 연구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경북대학교 사학과 BK사업단, 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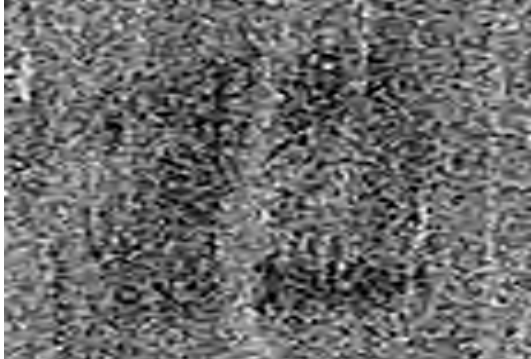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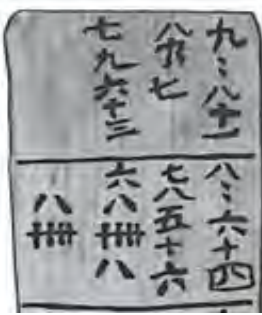
37) 法書會編輯部, 2014, 『五體字類』改訂第四版.

		
성산산성 김해1269(松)	성산산성 가야1614(松)	송(松)

또한 6호 목간에는 ‘.’라는 기호가 등장한다. 이 기호는 마지막 글자인 休 다음에 위치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 2016년에 출토된 경주 월성해자 목간이 있다. 이 목간의 경우 문서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관등 뒤에 ‘.’이 있다. 두 목간에서 등장하는 기호는 해당 면의 마지막 글자 다음에 위치하며, 기호 아래에도 한 두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즉 목간을 접하는 독자에게 내용이 끝난다는 점을 알려주는 표시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기호는 오늘날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팔거산성 6호 목간 기호	경주 월성 해자 목간(임 418) 기호

7호 목간에는 ‘=’로 추정되는 기호도 발견된다. ‘=’는 6번째 글자 鄒와 8번째 글자 下 사이에 위치하는데, ‘乙’일 가능성도 있다. 이 표현은 다른 글자에 비해 그 크기가 작다는 점, 부여 쌍북리에서 출토된 구구표 목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기호가 중복되는 글자를 표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글자라기보다 기호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또는 乙)’은 같은 글자의 중복을 표시한 기호로 추정된다.

	
팔거산성 7호 목간(=)	부여 쌍북리 출토 구구표 목간 일부 자료

한편 팔거산성 14호 목간에는 왕경 6부 가운데 하나인 추波部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村이라는 표현도 보인다. 이는 위쪽이 파손된 15호 목간의 ‘□村’, 16호 목간의 ‘男谷村’처럼 존명만 등장하는 사례와 다르다. 그런데 월성해자 9호 목간에는 翳比部 上里와 牟喙 仲里, 남산신성비 제3비의 喙部 主刀里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部 예하에 里로 편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누고 후자는 왕경 외에 존재했던 지역을 가능성이 높으며, 喙과 沙喙을 제외한 나머지 4부는 部の 재정원으로서 지방의 촌락을 장악했다는 견해가 있다.³⁸⁾

또한 6세기 이후 본격적인 정복사업을 통해 북쪽지역의 새로운 토지와 노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왕과 중앙 귀족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했다고 보기도 한다.³⁹⁾ 그리고 가야1590 목간의 本波大村, 가야2026 목간의 喙大村 등의 사례를 통해 왕실과 6부가 지방의 중요 거점에 대해 경제적인 권리를 행사했으며, 팔거산성 목간의 내용을 통해 금호강 일대 왕경에 가까운 경산 주변에도 이러한 지역이 설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⁴⁰⁾ 이들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다면 ‘추波部 □□村’도 성산산성 목간의 사례처럼 지방에 위치하면서 본파부의 경제적 기반이 된 곳이라 할 수 있다. 662년에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本彼宮의 財貨, 田莊, 奴僕은⁴¹⁾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통해 축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호 목간에는 安居社, 16호 목간에는 安居利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한다. 이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표기법은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 즉 安과 居의 획을 쓴 방식이 다르다는 점, 1호 목간의 경우 획의 강약을 조절했지만 16호 목간은 그렇지 않다는 점, 甘麻谷과 男谷村이라는 별개의 지명과 함께 등장한다는 점, 干支의 유무 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 4호 목간의 稻, 14호 목간의 米, 15호 목간의 禾가 나온다는 점은 흥미롭다. 비록 15호 목간의 禾는 판독이 불확실하지만, 4호나 14호 목간의 사례로 볼 때 한 가지 종류의 곡물이 이삭, 도정 전, 도정 후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용도나 보관 기간에 따라 구분해서 곡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즉 산성은 군사 및 행정거점이었으므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米와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관 가능한 禾나 稻로 나눠서 보관했을 것이다.⁴²⁾

지금까지 목간의 판독과 내용 그리고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목간의 제작연대로 추정되는 壬戌年과 丙寅年은 팔거산성의 기능과 성격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 간지는 각각 602년과 606년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신라의 진평왕 24년과 28년, 백제의 무왕 3년과 7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이 무렵의 사정을 전하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백제본기에 따르면 신라와 백제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즉 602년 8월에는 백제가 아막성을 공격했으며,⁴³⁾ 605년 8월에는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지만 신라가 백제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전한다.⁴⁴⁾ 또한 백제는 611년 10월에 가잠성,⁴⁵⁾ 616년 10월에는 모산성을 침공했다.⁴⁶⁾ 이러한 측면에서 7세기 초반은 신라와 백제가 공방을

38) 尹善泰, 2014, 「新羅 中古期 六部の 構造와 起源」 『新羅文化』 44, 306~317쪽.

39) 金昌錫, 1991, 「통일신라기 田莊에 관한 연구」 『韓國史論』 25, 48~49쪽.

40) 이용현, 2021, 「城山山城 木簡에 보이는 신라의 지방경영과 곡물·인력 관리 - 城下麥 서식과 本波, 喙의 분석을 중심으로 -」 『동서인문』 17, 22~27쪽

41)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上 2年.

42) 팔거산성 출토 목간의 제작 추정 시점보다 늦은 시기이지만 문무왕대에 설치된 남산신성 長倉에 米穀과 兵器를 보관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三國遺事』 卷2 紀異2 文武王 法敏)

4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4년조 및 『三國史記』 卷45 列傳5 貴山.

4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7년조.

4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33년조 및 『三國史記』 卷47 列傳7 奚論.

주고받는 긴장관계였다.

팔거산성이 위치한 대구지역은 두 나라가 직접 충돌한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양국 간의 형성된 긴장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 624년에는 백제가 속함성, 앵잠성, 기잠성 등 오늘날 경남 함양과 그 주변 지역을 공격하였고⁴⁷⁾ 642년에는 신라의 주요 군사 거점인 대야성을 함락시켰다.⁴⁸⁾ 이로 인해 신라는 새로운 거점을 압량주에 마련한다. 즉 남서쪽에서 전개되던 신라와 백제의 대립 양상이 점차 동쪽인 신라 왕경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대구지역은 주목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서쪽 지방에서 경주로 이동할 경우 대구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다. 대략 출발지 → 대구 → 경산 → 영천 → 경주 순으로 이어지며⁴⁹⁾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뒷날의 일이지는 하지만 839년에 청해진 장보고의 군사들이 왕경으로 이동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발한 진압군과 만나서 대결한 곳도 대구였다.⁵⁰⁾ 또한 대구는 낙동강과 금호강을 끼고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다. 또한 4~5세기 무렵인 마립간기의 대구는 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백제나 가야로부터 사로 지역을 방어하는 핵심 전진 기지였으며⁵¹⁾,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팔거산성이 위치한 곳은 대구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며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과 가깝다. 또한 보리나 벼와 같은 곡식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 등장하는 표현과 비슷한 것이 등장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 기록, 산성의 입지 그리고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사례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7세기 초반 무렵의 팔거산성은 인근 지역을 감시 및 통제하는 거점이었다고 여겨진다.⁵²⁾

팔거산성의 역할은 기록 속에 등장하는 八居里縣과 연관시킬 수 있다. 즉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오늘날 대구 지역에 위치한 5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八里縣이 등장하는데 본래 명칭은 八居里縣이었다고 전한다. 또한 縣制가 채용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7세기 중엽에는 팔거리현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의 이름으로 보아 팔거리에 행정치소가 위치했을 것이다.⁵³⁾

비록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7세기 초반에 지역 거점의 역할을 수행했던 산성의 존재를 고려하면 팔거리의 행정치소는 오늘날 대구 칠곡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이 일대에는 오늘날에도 팔거천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 1981년 대구에 편입되기 전에는 칠곡군의 중심지이기도 했

4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38년조.

47)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6년조 및 『三國史記』 卷47 列傳7 訥催.

48)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조 및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년조.

49) 경주 외곽을 방어하는 5개의 방어체계 가운데 달성 죽곡산성, 대구 팔거산성, 대구 용암산성, 경산 부호리성지 그리고 영천 금강산성(대의리산성) 그리고 경주 부근성 작성, 서형산성으로 이어지는 횡축 방어체계를 상정하는 견해도 있다.(조효식, 2010, 「유적 분포도를 활용한 영남지역 삼국시대 교통로와 방어체계 검토」 『지역과 역사』 26, 24쪽)

50)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민애왕 2년조 및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양.

51) 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90쪽.

52) 6세기 이후 기와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기체류 혹은 행정적 기능을 가진 거점성곽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조효식, 2010, 「성곽을 통해 본 삼국시대 대구지역의 사회 모습」 『嶺南文化材研究』 23, 107쪽; 나동욱, 2016, 「팔거산성의 구조적 특성과 학술적 가치」 『구암동고분군-팔거산성의 문화유산 가치와 활용 방안 학술대회 자료집』, 영남문화재연구원·대구 북구청, 52쪽) 그런데 추정 목곽고의 존재와 축조 기술, 출토된 목간의 내용을 고려하면 7세기 무렵에는 팔거산성이 행정이나 군사적인 거점의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53) 朱甫墩, 1996, 「新羅國家形成期 大邱社會의 動向」 『韓國古代史論叢』 8: 1998,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423~425쪽. 이와 관련하여 7세기 전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한정적인 기간 내에 달구벌에 군치가 있었고, 4개의 현이 그에 영속되었다고 본 견해도 있다.(朱甫墩, 2010, 「新羅 麻立干時代의 大邱」 『嶺南文化材研究』 23, 17쪽.)

다. 이는 산성 서쪽에 위치한 구암동 고분군⁵⁴⁾과 존재를 통해서도 짐작 가능하다. 따라서 팔거산성은 지역의 행정 및 군사 업무를 담당한 거점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팔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은 산성의 기능과 위상을 드러내주는 유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팔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 목간은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과 문헌 기록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 등을 통해 7세기 무렵 신라의 군사 및 행정체계 속에서 팔거산성의 위상이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목간의 내용 가운데 추가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먼저 壬戌年과 丙寅年 등 간지가 등장하지만 月日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이다. 단순한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 月日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는 점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목간이 작성된 시점은 보리(麥)나 벼(稻)가 등장하므로 한 해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라고 여겨진다. 다른 하나는 下麥과 王私라는 표현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이다. 널리 알려졌다듯이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도 이들 표현이 보이는데, 산성이라는 입지 또는 조세 수취나 물품 징발과 관련된 곡물 운송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통점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향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54) 구암동 고분군은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이재광, 「구암동 고분군의 발굴조사와 구조적 특성」 『구암동고분군·팔거산성의 문화유산 가치와 활용 방안 학술대회 자료집』, 영남문화재연구원·대구 북구청, 19쪽)

몽촌토성 집수지 출토 목간

박중균(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夢村土城 집수지 출토 木簡



박중균(한성백제박물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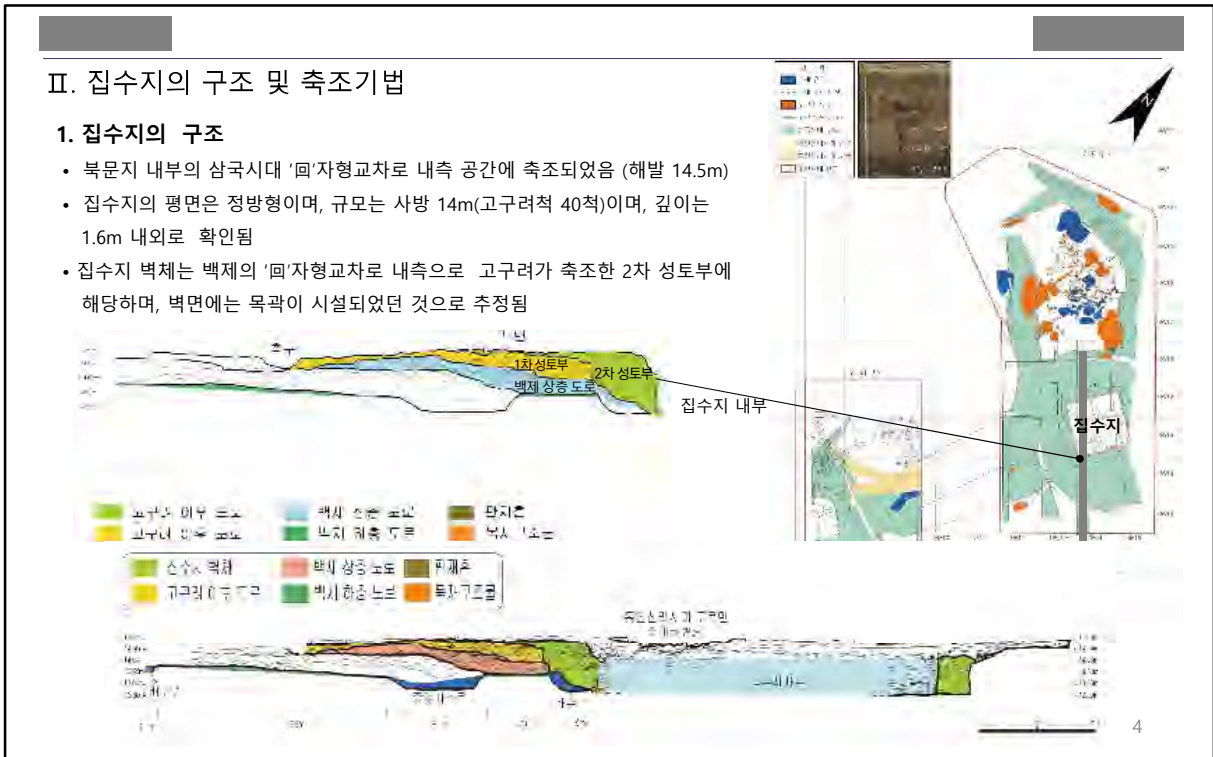
I. 머리말

- 한성백제 왕성[南城]으로 인식되고 있는 몽촌토성(사적 제297호)은 그 축조 및 경영시기, 성격 등을 구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 11월 부터 복문지 일원에 대하여 연차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조사결과 몽촌토성은 백제 한성기부터 고구려, 신라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는 문화층이 층서를 이루며 중층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삼국시대 문화층에서는 도로와 집수지, 건물지·수혈유구 등의 생활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백·제·고구려의 토기류와 철기류, 중국청자, 가야토기, 왜의 스에키(須惠器)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 특히, 주요유물중에는 7호 수혈유구 출토 '宮(혹은 官)'자명 백제직구호와 집수지 출토 木簡이 있다.
- 본 발표에서는 목간이 출토된 집수지의 축조방법과 축조 및 활용시기, 출토된 목간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몽촌토성 지형도(1:5,000)

2



2. 집수지의 축조기법



5) 벽체 상단부 내에는 骨組(횡장목과 종장목)가 확인됨

- 남서벽 횡장목 : 2.6m 간격으로 4개 노출
- 북서벽 횡장목 2.1~2.3m 간격으로 4개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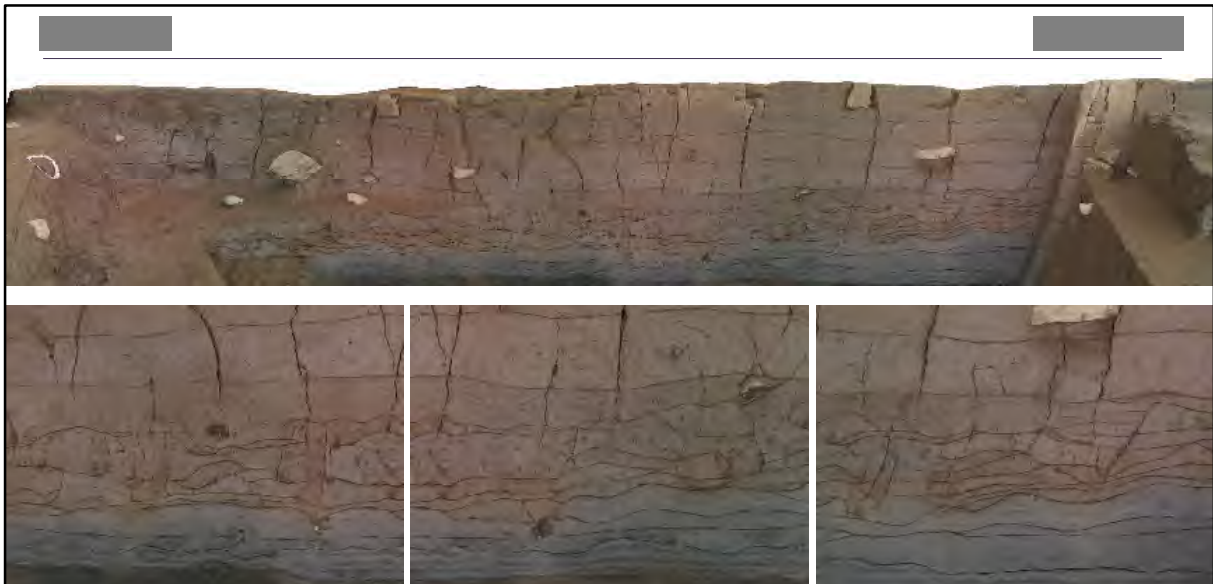


4-1) I 층군



- 집수지 폐기 이후의 상부 성토층. 적갈색, 황갈색점토(부분적으로 경회층)를 5~10cm 두께로 깔아 단단히 다진 후 최대 85cm 높이까지 성토하여 대지 조성. 상대적으로 상부의 성토층 두께가 두꺼운 편. 성토층 내에는 할석과 강돌 포함. 목판흔적도 확인

9



- 특히 3구역 남벽토층의 I 층군의 하부에서 인위층의 양상이 현저함.
50cm 단위의 성토단위가 수직선을 경계로 확인. 판재와 같은 부재의 활용을 추정할 수 있음.
수혈 등의 굴착을 수반한 유구 없음. 주로 고구려토기 출토. 통일신라토기 없음.

10

4-2-1) Ⅱ층군 층위 양상



<1구역> • 집수지 내부 중단 이상의 회색점토와 회황갈색 점토 중심의 층군으로 해발 13.6~14.2m에 분포.

- Ⅱ층군은 5층(Ⅱ-1~5층)으로 구분 가능. Ⅲ층군과 다르게, '라미나-점토층-라미나-점토층'의 반복.
- 요철면과 토괴도 일부 확인. 특히 집수지의 벽가를 따라 토괴, 할석, 강돌이 뒤섞인 인위층이 복잡한 형태 확인.

11



<2구역> • 집수지 내부 중단 이상의 회색점토와 회황갈색 점토 중심의 층군으로 해발 13.6~14.2m에 분포

- Ⅱ층군은 5층(Ⅱ-1~Ⅱ-5층)으로 구분 가능. Ⅲ층군과 다르게, '라미나-점토층-라미나-점토층'의 반복
- 요철면과 토괴도 일부 확인. 특히 집수지의 벽가를 따라 토괴, 할석, 강돌이 뒤섞인 인위층이 복잡한 형태 확인

12

4-2-2) Ⅱ층군 출토유물



4-3-1) Ⅲ층군의 층위 양상 : 수성퇴적층(1~5개 층)

- 두께 : 약 90cm(해발 13.8m ~ 12.9m)
- 특징 : 회색 점토질의 수성퇴적으로 대부분의 층에서 두께 1~2cm인 라미나층이 수평퇴적.
- 바닥시설: 집수지 바닥에는 주먹크기의 할석이 20cm 깔려 있고, 그 아래에는 회색 모래층



4-3-2) ㅍ층군 출토유물



5. 집수지의 축조 및 사용시기

- 집수지의 축조 및 사용주체는 고구려로 판단됨

- 고구려 1차 성토부 기저부에서 고구려 원통형 삼족기가 출토됨
- 집수지 축조에 사용된 목재와 집수지 내부 출토 목재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대분석(연륜연대분석을 이용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위글매칭법-)을 실시한 결과, 대략 469년~541년 사이(95.4%)에 축조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집수지 내부의 Ⅱ·Ⅲ층군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백제와 고구려 토기만 확인되었으며, 집수지 매몰후의 상부 성토대지 조성층인 I 층군 내에서도 고구려와 백제토기편들이 출토되었고, 신라~통일신라 토기는 출토되지 않음



Ⅲ. 집수지 출토 木簡의 현황

1. 출토상황

- 집수지 1구역 Ⅲ-2층(해발 13.41m)에서 2개의 조각으로 분리 되어 출토



17

2. 목간의 형태와 크기

- 잔존상태 : 거의 완형에 가까우며, 하단부가 일부 결실되었음
- 제작기법 및 형태
 -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목간을 만들
 - 묵서명이 있는 앞면은 수평면으로 다듬었고, 뒷면은 완만한 곡면을 이룸
 - 상단부는 弧狀의 곡선에 가깝게 다듬었으며, 하부는 양측변에서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좁혀 들어와 폭이 축약됨
 - 하단부는 반원상으로 잔존함
- 크기 : 길이 15.6cm, 너비 2.5~2.7cm, 최대두께 0.4cm



이물질 제거후 촬영한 적외선사진

18

3. 목간의 목서명



일반사진

DSLR 적외선카메라

CCD 적외선카메라
(반전)

- 두 차례에 걸친 판독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정확한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운 상황임
- 목서명은 한쪽 면에 한 줄로 큰 글자 6~8자 정도, 우측 하단에 4~5자 정도의 작은 글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판독자문회의 결과 추정된 글자 >

- 「傳□□(捷)□(草)^{東人□□(□)}
- 「□直□捷□車^{車人□(□)}
- 「□□□捷□(卓)^{東人□□}

19

IV. 맺음말 – 몽촌토성 출토 목간의 의의

- 출토유물 및 자연과학적 연대분석을 통한 집수지의 축조 및 사용시기를 통해 볼 때 집수지 출토목간은 551년 이전의 고구려 목간일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한국 최초의 고구려 목간이면서 최고(最古)의 목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0

경주 傳황복사지 출토 문자자료

김희철(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傳황복사지 출토 문자자료

김희철(성림문화재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전황복사지의 역사적 기록 및 조사현황
 3. 발굴조사내용
 4. 황복사지 문자자료 검토
 5. 맺음말
-

1. 머리말

전황복사지는 1928~30년대 과수원과 논둑 경계에서 십이지신상 일부가 확인된 중요 유적으로 경주 낭산 일원(사적 제163호-1968.12.13)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주시는 2015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인「경주 낭산일원(사적 제163호)」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낭산 주변 폐왕릉지로 추정되는 곳에 노출된 석재 유구가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유구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해 발굴(시굴)조사를 통한 향후 유적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고고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전황복사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다. 이에 성림문화재연구원이 2016년 6월의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 4월까지 5차에 걸친 시·발굴조사를 연차적으로 진행하였다.

황복사지는 1937년 부산에 거주하였던 일본인이 음각으로 새겨진 ‘황복’과 ‘왕복’명 기와편을 낭산 동쪽에서 수습하였으며, 이 후 1942년 삼층석탑 해체수리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 뚜껑의 탑지 내용에 왕실의 기복을 위하여 탑을 건립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이 곳을 전황복사지로 비정하고 있는 곳이다.

전황복사지는 발굴조사결과 1차 조사에서 왕릉 관련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완성관련 왕릉부재가 확인되었고, 이는 경주지역 가구식 호석을 가진 석실분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황복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황복사지 북쪽 사역경계 및 동쪽 문지와 회랑, 황복사지 석탑의 위치 문제 및 금당지 기단으로 사용된 십이지신상과 폐왕릉지와 의 연관성 등 황복사지와 폐왕릉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1차 조사 및 4차 조사에서 확인된 남-북 및 동-서의 대형도로는 황룡사지 및 월성에서 이어지는 왕경의 도시 계획이 보문들까지 넓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문자자료 및 기초사된 문자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전황복사지 역사적 기록 및 조사현황

황복사지가 위치한 낭산은『삼국사기』에 의하면 실성왕 12년(413) 8월에 구름이 낭산에 일어났는데, 구름이 누각같이 보이고 사방에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늘의 신령이 내려와서 노는 것임에 틀림없다’‘이것은 응당 복지(福地)이다’¹⁾라고 생각

1)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三 實聖 尼師今.

한 왕은 낭산을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겨 나무 한 점 베지 못하게 하였다.

황복사에 관한 기록으로『삼국유사』에 의하면 654년(진덕여왕 8)에 의상(義湘)이 황복사에서 29세에 출가(出家)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나, 출가는 그 이전에 하였고 정식으로 계를 받고 도첩을 받은 때로 판단된다. 동서 권4 의상전교조에 의상이 요탑(繞塔)행위를 하였다²⁾는 기록은 탑을 돌 때 도중은 층계를 밟고 하였으나 의상은 허공을 밟고 올라가 층계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짐작컨대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또한, 표훈은 경덕왕대(742~764년) 대덕으로 황복사에 주석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의상과 동시대 인물로 기록되었다는 점은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후대에 윤색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리고『삼국유사』에 경명왕(923 흥)을 황복사에서 화장하여 뼈는 성등인산 서쪽에 산골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왕이 죽어 시호를 경명이라 하고 황복사 북쪽에 장사지냈다는 기사가 있어 서로 상충되는 기록이 확인된다.

황복사지에 대한 이전 고고·미술학적 조사 및 연구는 먼저 일제강점기인 1928~30년대 노세우시조(能勢丑三)에 의해 전황복사지 삼층석탑 동쪽 과수원과 논 경작지 경계에 위치한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별다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68년 신라삼산오악조사단에 의해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금당지 기단에 붙여 8기의 십이지신상이 확인되었으며, 북쪽부터 돼지(亥), 쥐(子), 소(丑) 像 외에도 상부가 파손된 像 1기, 동쪽에 토끼(卯), 뱀(巳), 말(午), 양(未)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³⁾ 이 후 1982년에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6기의 십이지신상(亥, 子, 丑, 巳, 午, 未)을 동서 8m, 남북 12.7m 범위 내에서 재확인한 바 있다.⁴⁾

전황복사지 삼층석탑은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1942년 이 탑을 해체 수리할 때, 제2층 옥개석에서 금동사리함의 출토되었으며, 내부에서 금제여래입상과 금제여래좌상이 발견되어 국보 제80호와 국보 제79호로 지정되었다.

3. 발굴조사 내용 검토

전황복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폐왕릉지를 중심으로 한 1차조사에서 황복사지 중심 사역 및 주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2~5차 조사로 구분된다. 현재 폐왕릉지에 대한 1차 조사는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많은 발표가 진행된 사항임으로 여기서는 2~5차에 대한 황복사지 사역을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진행하고자 한다.

전황복사지와 관련된 본격적인 조사는 2017년 황복사지 삼층석탑과 1차 조사지역 사이에 대한 2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황복사지 삼층석탑과 귀부 등에 대한 조사,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황복사지 북쪽과 남쪽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그 결과 조사지역에서는 금당지, 추정 쌍탑지, 비각지, 중문지, 회랑지, 대석단 및 담장, 도로, 우물, 연지, 기타 부속건물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유구로 볼 때 황복사지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말기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그 법등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일기 이전인 창건 가람의 형태는 남-북 축선상의 중심에 위치한 (傳)황복사지 금당지를 위시하여 남쪽으로 추정 동·서목탑지가 자리하며, 남쪽 중앙에 중문지와 1호 남회랑지가 각각 위치한다. 이후 692년에 황복사지 삼층석탑이 세워지면서 석탑의 신성한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1호 대석단이 남-북 방향으로 축조되고, 2호 대석단은 선축된 금당지 기단에 덧붙여

2) 『三國遺事』 卷 第四 義解第五 義湘傳敎.

3) 考古美術同人會, 1968, 『考古美術 第九卷 第五號』.

4)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博物館, 1985, 『新羅狼山遺蹟調査』.

1호 대석단과 평행되게 남북으로 57.5m의 규모로 축조된다. 한편, 대석단의 정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문지와 계단지를 축조하였는데, 이는 석탑의 정동에 위치한 (전)진평왕릉을 조망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 후 금당의 기단 개보수를 위해 북쪽 대석단 일부를 뜯어내고 십이지신상을 사용한 기단을 만들 후 북쪽 대석단 기단을 다시 쌓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전황복사지 발굴조사지역 전경(항공)

이처럼 통일신라시대에 신성시된 공간은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시대 초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석탑의 북쪽에 소규모 건물지들이 폐기와 축조를 반복하며 유존하였고, 남쪽으로도 역시 이와 관련된 석렬들이 확인된다. 한편, 고려시대 이후로도 1호 대석단의 동쪽 아래로 영성하긴 하지만 금당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석을 재활용한 건물지가 각각 축조되어 지속적으로 사역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차 조사에서는 황복사지 북쪽 경계를 확인하였는데, 담장과 함께 동-서도로와 측구 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동-서 도로는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남-북대로와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 확인된 방지와 일직선상으로 연지가 확인되었는데, 초기 형태는 방지와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증개축을 거치면서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황복사지는 중심건물이 동문지- 대석단- 석탑으로 이어지는 중건기 가람의 형태로 남-북 축선상에서 동-서 가람으로 변천된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승방과 관련된 부속 건물지가 남쪽에 위치한 중문지 앞쪽의 동쪽 및 중심건물 주변에 조성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 창건기(6세기 중엽 ~ 7세기)

황복사지 창건기 가람의 형태는 이전 기술한 것과 같이 금당지-추정 쌍탑지, 중문지로 이어

지는 남-북 가람의 형태이다. 여기서 대표적인 유구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금당지

3차 조사지역 중앙부에 위치한 건물지로 전황복사지의 금당지로 추정된다. 건물지의 동쪽과 북쪽으로 십이지신상 기단을 마련하였으며, 서쪽으로 인접하여 1호 대석단이 남-북방향으로 진행한다.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4칸이며, 주칸거리는 400cm으로 동서길이 28m, 남북길이 16m이다. 적심은 성토층을 'U'자상으로 80cm가량 굴착한 후 크기 15~30cm내외의 냇돌 및 할석과 함께 황갈색사질점토를 채워 직경 170~210cm의 크기로 축조하였다. 건물지의 방향은 남향이며, 건물지의 남쪽 정중앙 축선으로 1호 집석과 중건된 중문지가 위치한다. 건물지 동쪽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 주칸거리 500cm, 동서길이 5m, 남북길이 5m인 줄기초 시설이 확인되어 기존에는 별도 건물지로 보았으나 금당의 내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의 서남쪽에는 금당지의 기단석으로 추정되는 'L'자상의 장대석이 남쪽과 서쪽으로 면을 맞춘 상태로 확인되며, 이 기단석은 동쪽의 십이지신상기단과 연결된다. 금당의 기단은 기존 장대석을 사용한 기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개보수를 하면서 지대가 낮은 동쪽과 북동쪽 기단을 못 뿌리가 남은 십이지신상을 사용하여 토압을 많은 부분에 대해 보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단에 사용되는 십이지신상이 아닌 왕릉 부재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십이지의 순서를 맞추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땅속에 묻히는 부분에 십이지신상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장식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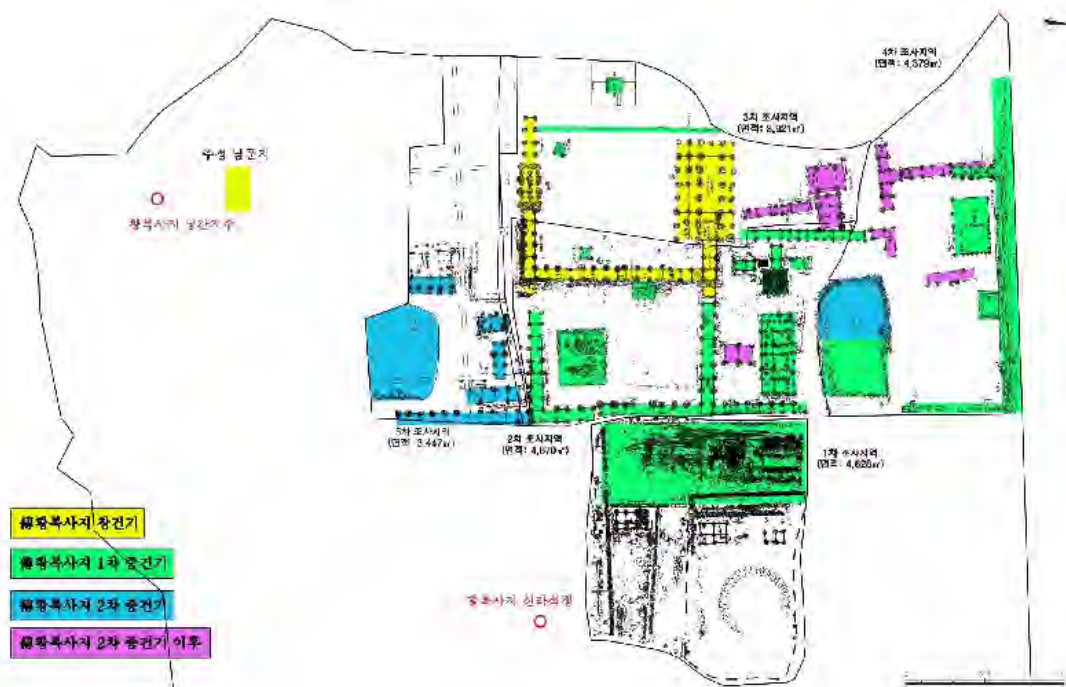
십이지신상 기단의 동쪽은 면석 2매와 남쪽으로부터 양(未)상·말(午)상·뱀(巳)상·토끼(卯)상이 조각된 화강암 재질의 석재들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현재 토압에 의해 외측으로 휘어져 약간 튀어나온 상태이다. 북쪽은 탕석 2매·면석 1매와 동쪽에서부터 소(丑)상·쥐(子)상·돼지(亥)상·개(戌)상이 순서대로 위치하며, 평면조사 중 3차례에 걸친 조사(1928년·1968년·1982년)의 흔적인 반타원형의 교란 수혈이 십이지신상의 전면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십이지신상은 길이 약 110cm, 너비 약 67cm 정도로 그 규모가 모두 동일하며, 그 배치에 있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는 않는다. 조각 양식은 평북부조의 형식을 띄고 있고, "S"자형 허리와 왼손은 옷 속으로 넣은 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는 점, 바위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정형의 대좌 위에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점 등의 특징들이 확인된다.

한편, 십이지신상은 1928년 노세 우시조가 최초로 확인한 후, 1968년 신라삼산오악조사단에서 시굴조사와 1982년 동국대박물관에서 피트조사를 하였으나 성격을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이 십이지신상은 탑에 새겨진 것처럼 불교 건축물의 기단 축조용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왔으나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전황복사지의 추정 금당지 기단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십이지신상 탕석의 규모를 비롯한 전면(前面)의 형태가 평면이 아닌 완만한 호형(弧形)을 이루고 있는 특징들이 좀 더 명확해짐에 따라 왕릉에 사용되었던 탕석을 재사용한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2) 추정 동·서 목탑지

추정 목탑지는 금당지 남쪽 하단부 동-서 동일 축선에 평면 방향으로 확인되었으며, 규모는 동-서 길이 6m, 남-북 길이 6m이다. 추정 서목탑지의 남쪽으로 인접하여 6호 건물지가, 추정 동목탑지의 동쪽으로 인접하여 7호 건물지가 각각 위치한다. 추정 목탑지의 축조방법은 방향의 굴광선 가장자리 둘레에 1.5m가량의 범위에 'U'자상으로 0.5~1.2m가량의 깊이로 굴착한 후 내부에 크기 15~30cm가량의 냇돌과 황갈색사질점토 및 갈색사질점토를 혼용하여 판축

형태로 채워 다졌다. 그 상부에 다시 크기 10cm 내외의 냇돌을 깔고 각 면에 크기 15~30cm가량의 냇돌을 사용하여 직경 150cm가량의 적심 4개를 축조하였다. 내부를 ‘十’자상으로 4등분한 후 북서쪽과 남동쪽의 내부를 평면하강하면서 심초석의 유존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내부에는 상부에서부터 암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고, 심초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문지의 중심과 북쪽 추정 금당지의 중심을 가르는 중심축선에서 동·서로 각각 12m 이격된 지점에 동일한 형태로 축조되었으며, 목탑지의 기초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중문-쌍탑-금당의 사찰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추정 목탑지 내부에서 심초석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건물 배치형태로 보아 (傳)황복사지의 금당지 및 중문지와 세트를 이루는 동·서 목탑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추정 목탑지는 다른 사찰의 목탑지와 비교해서 규모가 작으며, 중문지와 가깝고, 추정비각지가 연접하여 위치하기에 비각과 관련된 제의시설일 가능성과 종루와 경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면 1. 전황복사지 가람변천도

(3) 남회랑지 및 중문지

남회랑지는 2호 대석단의 남쪽에서 동-서로 이어지는 단랑의 회랑지로, 선축된 전황복사지의 1호 남회랑지와 2호 대석단과 함께 후축된 4호 남회랑지로 구분된다. 1호 남회랑지는 규모는 정면 4칸이며, 동쪽으로 전황복사지의 추정 중문지와 이어진다. 적심은 성토층을 ‘U’자상으로 0.8m 가량의 깊이로 굴착한 후 크기 30cm 내외의 냇돌 및 할석과 함께 황갈색사질점토를 채워 직경 100~180cm의 크기로 축조하였다. 적심간의 주칸거리는 330cm 정도로 비교적 동일하다. 초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후축된 9호 석렬이 회랑지를 ‘ㄱ’자상으로 꺾여 지나간다.

전황복사지의 추정 중문지는 초축된 후 화재로 인해 소실되고 나서 다시 중건된 것으로 판단

된다. 초축된 중문지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적심은 성토층을 'U'자상으로 60cm가량의 깊이로 굴착한 후 크기 30~50cm내외의 냇돌 및 할석과 함께 황갈색사질점토를 채워 직경 190~210cm의 크기로 조성하였으며, 주칸거리는 360cm가량이다. 중건된 중문지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초축된 중문지와 동일하며, 적심은 성토층을 'U'자상으로 70cm가량의 깊이로 굴착한 후 크기 30cm내외의 냇돌 및 할석과 함께 황갈색사질점토를 채워 직경 120~150cm의 크기로 조성하였으며, 주칸거리는 300cm가량이다. 즉, 전황복사지의 중문지는 적심의 규모나 주칸거리로 추정컨대 중건되면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건기

(1) 황복사지 삼층석탑

석탑은 조사지역의 서쪽 중앙부 최상단에 위치하며, 국보 제3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전 구 황동 삼층석탑으로 불리 우다가 최근 황복사지 삼층석탑으로 명칭이 수정되었다. 전체 높이는 7.3m이며, 2단의 기단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모습으로 탑의 상륜부는 유실되었다. 석탑은 일제 강점기인 1942년 해체·복원되었으며, 이 과정 중 2층 옥개석 내 안치된 사리함 속에서 금제여래좌상(국보 제79호)과 금제여래입상(국보 제80호), 그리고 다량의 유리구슬·팔찌·금실 등이 발견되었다. 사리함 뚜껑 내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신라 효소왕이 돌아가신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그 이듬해(692년)에 세웠으며, 효소왕이 돌아가자 성덕왕이 그 5년(706년)에 앞서 두 왕을 위해 사리, 불상 등을 다시 넣고 왕실의 번영과 태평성세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사진 2. 황복사지 삼층석탑 조사 전경

석탑의 북·남·동쪽에 3개의 탐색 Pit를 설정한 후 석탑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초축된 석탑의 적심 기초시설과 함께 1942년 해체 복원과정에서 기초시설 상부에 타설한 콘크리트 기초를 확인하였다. 우선 초

축된 적심 기초시설은 기반토인 황갈색사질점토와 구지표층인 갈색사질점토를 길이 6m×6m, 깊이 2.5m로 방형의 구덩이를 'U'자상으로 굴착한 후 내부에 크기 50cm 내외의 냇돌과 황갈색사질점토를 채워넣어 길이 6m, 깊이 2.5m 가량의 규모로 기초를 다졌다. 1942년 해체·복원 시에는 축조 당시의 굴광을 재굴착한 후 50cm 내외의 냇돌과 흑갈색사질점토를 채워넣어 다졌다. 석탑의 기단에서 50cm가량의 외곽선상에는 기단석을 놓고 내부에 두께 60cm가량의 온통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었다. 1차로 타설된 온통 기초 상부에는 다시 자갈과 콘크리트를 혼합한 허튼 기초를 25cm가량의 두께로 타설한 후 상부에 석탑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2) 1호 대석단

전황복사지 3층석탑의 동쪽 아랫단에서 남-북으로 위치한다. 잔존규모는 남북 길이 30m이며 벽면을 화강암 재질의 치석된 장대석(長臺石) 또는 자연석을 사용하여 쌓은 석축기단 구조이다. 현재 최대 3단까지 잔존하며, 북쪽의 경계지점인 시멘트 포장길 아래로 이어진다. 석단의 축조방법은 먼저 남서고-동북저의 지형에 맞추어 부분적인 삭평을 하여 수평을 맞춘 후 북쪽에는 30cm 내외의 천석+할석 한 벌을 깔아 기초 지정을 한 후 길이 150cm 내외, 높이 47cm, 폭 50cm 내외 규모의 장대석을 1~2단까지 퇴물림 없이 수직으로 다듬돌 바른층쌓기 하였다. 석단의 중앙부터는 최하단에도 치석한 장대석을 사용하였으며, 남쪽으로 이어지며 동쪽으로 약간 꺾여진다. 석단의 남쪽 끝단부는 후대의 교란으로 거의 유실되었으며, 통일신라 이후에는 자연석과 유실된 장대석을 재사용하여 배수로가 축조되었다.

(3) 2호 대석단

황복사지 금당의 동쪽에 위치한다. 규모는 남북 57.5m, 동서 20m이며 벽면을 화강암 재질의 치석된 장대석(長臺石) 또는 자연석을 사용하여 쌓은 석축기단 구조이다. 기단축조의 방법은 먼저 남서고-동북저의 지형에 맞추어 부분적인 삭평을 하여 수평을 맞춘 후 30cm 내외의 천석+할석 한 벌을 깔아 기초 지정을 하고 남벽과 동벽에 길이 150cm 내외, 높이 47cm, 폭 50cm 내외 규모의 장대석을 잔존 1~2단까지 퇴물림 없이 수직으로 다듬돌 바른층쌓기하였다. 현재 후대 경작 및 토압에 의해 동편의 상단석 대부분이 이탈된 상태로 붕괴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동편 1차 발굴조사지 내 왕릉석재와 동일한 성격의 면석들이 확인된다. 한편 북벽은 너비 20~100cm 규모의 자연석을 단순하게 차곡히 쌓는 방식의 적초식 기단 형태로 서편의 금당 12지신상 기단에 덧대어 최대 1.2m 정도의 높이로 쌓아 올렸다. 따라서 대석단 기단 건물지의 시기적 판단은 대석단 조성 후 금당을 개보수하면서 대석단 북쪽 기단을 일부 뜯어내고 보수한 뒤 다시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의 축조시 이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기단의 내측에 30cm 내외의 속채움 돌을 다량으로 채워 넣었고, 북벽의 경우 자연석 사이 사이에 소형 할석과 사질점토를 채워 넣은 것이 확인된다. 기단의 상부 평면에는 크기 17칸×6칸의 회랑을 돌렸으며, 내부 회랑은 한 칸 규모가 3.3×3.3m 정도이고, 좌우 석단의 양 가장자리에 3.0×2.6m 규모로 방형 초석을 놓아 1칸의 누각을 부연한 단랑(單廊) 구조이다.

한편, 대석단의 북쪽으로 치우친 중앙부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의 전체 규모는 길이 3.6m, 너비 4m정도이다. 계단의 형태는 현재 갑석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직각 부등변사각형을 이루는 측면의 소맷돌 부분이 지대석, 면석, 갑석으로 구성된 가구식계단으로 추정된다. 계단 지대석은 길이 250cm, 너비 40cm, 높이 25cm이며, 갑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끝부분에 약간의 단을 마련하였고, 면석을 더 견고하게 결속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방형의 홈

과 법수석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결구 방식의 방형 홈을 뚫어 놓았다. 계단지 북쪽 측면에서 난간석으로 추정되는 8각형의 치석재가 확인될 뿐 법수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북편 지대석 위에 놓인 면석의 경우 윗면 길이 60cm, 아랫면 길이 126cm, 높이 55cm, 두께 37cm 정도이며 면석 사이로 계단의 아랫단에서 디딤돌 2매가 확인된다. 디딤돌을 받치고 있는 지면에 깔린 기초 지정 석렬의 분포양상을 감안할 때 높이 1~1.5m 정도 4~5단의 계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3. 2호 대석단 전경

(4) 1호 방지

황복사지 동쪽 대석단 계단부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다. 후대 경작과 교란으로 인해 남·동 벽석 상단이 대부분 유실되었고 유구의 폐기 과정 중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할석과 천석들이 상부에서 확인된다. 연지의 축조는 생토면을 굴착하고 그 안에 할석+천석을 방형으로 쌓아 조성하였다. 규모는 동-서 14m, 남-북 15.5m, 깊이 60cm 정도이며 적석호안에 사용한 석재는 그 크기가 지름 30cm 정도에서 1m를 넘는 것까지 다양하다. 유구의 축조시 사용하는 석재의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추어 호안 벽면에 돌을 가로 방향으로 쌓는 길이쌓기(長手積)를 기본으로 하였고, 일부분 큰 것과 작은 것을 섞어 쌓는 허튼쌓기(亂積)도 병행하였다. 현재 벽석은 1단에서 최대 4단까지 확인되고 있고, 동벽의 경우 생토층의 경사면을 일부 이용하여 최하단 지지석의 바닥면이 다소 높은 편이다. 바닥시설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면에 “ㄱ”자상의 석렬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중축과 관련한 초축(初築) 시설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집수·출수·입수·암거시설 및 정원관련 정원석(怪石)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 중 유구 중앙부 일원 뿔층에서 연화문 수막새, 당초문 암막새, 귀면와를 비롯한 금동불입상, 금동보살입상, 금동반구형장식 등 다량의 와전류 및 금동품들이 출토되었다.

3) 기타시설

(1) 2호 담장

4차 조사지역 북쪽 경계를 따라 동-서 축으로 진행되는 담장으로 4차 조사지역 1호 회랑지의 기단부부터 조사지역 동쪽 경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동쪽 경계에서는 직각으로 꺾여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도로와 나란히 진행되는 양상이나 약 10여미터 진행하다 훼손된 상태로 확인된다. 담장은 크기 30~40cm 정도의 냇돌을 사용하여 내외면으로 면을 맞추면서 가로놓혀쌓기와 세로놓혀쌓기를 혼용하여 2조의 석렬을 들어쌓기 수법으로 쌓고, 내부에 석재를 채워넣는 방식으로 조성하였다. 확인된 양상은 1~2단정도 잔존하고 있으며, 외부로 돌출되는 배수구가 2개소 확인되고 있다. 배수로는 담장과 직교되게 평평한 냇돌을 사용하여 벽석과 바닥석을 깔고 다시 개석을 덮었으며, 규모는 너비 약 80~90cm, 길이 3m의 크기로 담장의 내외부로 돌출되게 조성하였으며, 일부 배수로는 사역내부의 집수시설과 연계되어 확인되고 있다. 담장은 1호 도로유구의 측구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진행하고 있어 1호 회랑지의 북쪽 기단과 1호 도로유구와 같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쪽의 일부분은 2호 문지에 의해 파괴된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담장의 규모는 동-서 길이 약 65m, 너비 약 1.4~1.6m이며, 북-남 길이 약 11m, 너비 약 1~1.2m이고, 유물은 주변에서 와편 및 토기편들이 다량 수습되었다.

(2) 동-서 도로

4차 조사지역 북편의 경계를 따라 동-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구조로 보아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남-북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로 확인되며, 도로의 측구인 배수로 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도로면의 대부분이 농로에 의해 가려져 있고 상면부는 일부 경작지 조성으로 인해 삭평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규모나 양상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도로유구와 연계되고 측구의 양상이 같은 점 등으로 미루어 기초조사에서 확인된 도로의 규모와 양상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의 내부토는 잔자갈과 와편을 혼합하여 정지하였으며, 측구는 약 30~50cm 크기의 냇돌을 활용하여 세로쌓기와 가로쌓기 방식을 혼용하여 2~3단정도 쌓은 것으로 추정되며, 측구의 시작점은 사역의 범위로 추정되는 지점부터 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의 규모는 길이 약 95m이고 너비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측구의 규모는 길이 약 80m, 너비 약 1~1.5m로 서쪽이 좁고 동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3) 연지

2호 연지는 4차 조사지역 남동쪽 경계에 위치한다. 내부조사를 통해 최소 3차례 이상 증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현대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며 연지나 소화의 기능을 가진 집수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차시기 연지의 조성방식은 한면을 치석한 석재들을 2~3단정도 쌓아 방형의 형태로 축조한 것으로, 남편의 건물지와 후대 증개축으로 인해 그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1차시기 연지의 모서리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각각 3개의 귀면와가 확인되어 그 규모 및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2차시기 연지의 조성방식은 동쪽으로 확장하거나 새로이 개축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바닥석으로 보이는 석재들의 분포가 1차시기 연지의 조성범위를 침범하여 확인되고 있어 새로이 개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지 내부에서 바닥석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확인 되는점, 2차 조사에서 확인된 방지와 호석의 석축방식이 유사한점, 남-북축을 중심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2차 조사에서 확인된 방지

와 규모나 형태면에서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3차 조성방식은 2차 조성시 내부 바닥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의 서쪽부분이 타원형을 그리며 훼손된 양상이 확인되고, 이 타원형의 선이 외곽의 최상단 호석열과 연계되어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까운 선을 이루고 있어, 3차 조성시 내부가 한번 정리되면서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동쪽으로 확장되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성시기는 1차의 경우 연지 내부의 모서리에서 확인된 귀면와를 통해 8세기 중후반으로, 3차의 경우는 석축열 내부에서 청자편이 소량 확인되고 있어 고려시대에 확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차는 1차와 3차 사이인 통일신라시기인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규모는 길이 약 35m, 너비 약 21m, 깊이는 약 1.7m(약 220평)이고, 내부에서는 목간, 귀면와, 와편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4. 전항복사지 출토 문자자료 검토

항복사지에 대한 문자자료는 먼저 전술한 것과 1937년 일본인에 의해 수습된 ‘항복’, ‘왕복’ 명 암기와 편으로 그 출토지는 불명확하나 현재까지 항복사지 사명의 명문으로는 유일하다. 먼저 출토된 ‘항복’과 ‘왕복’명 기와는 동아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양각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음각으로 시문된 것이다. 현재 실물로 실견하지는 못하였으나, 공개된 탁본 및 사진자료로 볼 때 양각으로 새긴 기와보다는 그 명확성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사진 4. 항복 및 왕복 기와(출처: <https://blog.naver.com/jw1405/222196623241>)

두 번째 문자자료는 1942년 삼층석탑 해체수리 과정에서 출토된 금동사리 외함 뚜껑에 기재된 문자 내용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夫聖人垂拱處濁世而育蒼生至德無爲應閭浮而濟群有 神文大王五戒應世十善御民治定功成天授三年壬辰七月二日乘天所以 神睦太后 孝照大王奉爲 宗廟聖靈禪院伽藍建立三層石塔 聖曆三年庚子六月一日神睦太后遂以長辭 高昇淨國大足二年壬寅七月廿七日孝照大王登霞神龍二年丙午五月卅日 今主大王佛舍利 四全金彌陀像六寸一軀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安置石塔第二層以卜以此福田上資 神文大王 神睦太后 孝照大王代代聖廟枕涅盤之山坐菩提之樹 隆基大王壽共山河同久位與軌川等大千子具足七寶呈祥 王后體類月精命同劫數內外親屬長大玉樹茂實寶枝梵釋四王威德增明氣力自在天下太平恒轉法輪三塗勉難六趣受樂法界含靈俱成佛道 寺主沙門善倫 蘇判金順元 金興宗特奉 教旨僧令僞僧令太韓奈麻阿摸韓舍季歷塔典僧惠岸僧心尙僧元覺僧玄昉韓舍一仁韓舍全極舍朝陽舍知純節匠季生闕溫

- 대저 성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혼탁한 세상에서 백성을 기르고 지극한 덕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신문대왕은 오계로 세상에 응하고 십선으로 백성을 다스려 통치를 안정시키고 공을 이루고는 천수3년(692) 임진년 7월 2일에 돌아가셨다. 신목태후와 효조대왕이 받들어 종묘의 신령한 명령을 위해 선원가람에 삼층석탑을 세웠다. 성력 3년(700) 경자년 6월 1일에 신목태후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 높이 극락에 오르고, 대족2년(702) 임인년 7월 27일에는 효조대왕도 승하하였다. 神龍2년(706) 병오년 5월 30일에 지금의 대왕이 불사리 4과와 6치 크기의 순금제미타상 1구와 『무구정광대다나니경』 1권을 석탑 2층 내에 안치하였다. 이 복전으로 위로는 신문대왕과 신목태후, 효조대왕의 대대 성묘가 열반산에 놓고 보리수에 앉는데 보탬이 되기를 빈다. 지금의 용기대왕은 수명이 강산과 같이 오래하고 지위는 알천과 같이 크며 천명의 자손이 구족하고 철보의 상서로움이 나타나기를 빈다. 왕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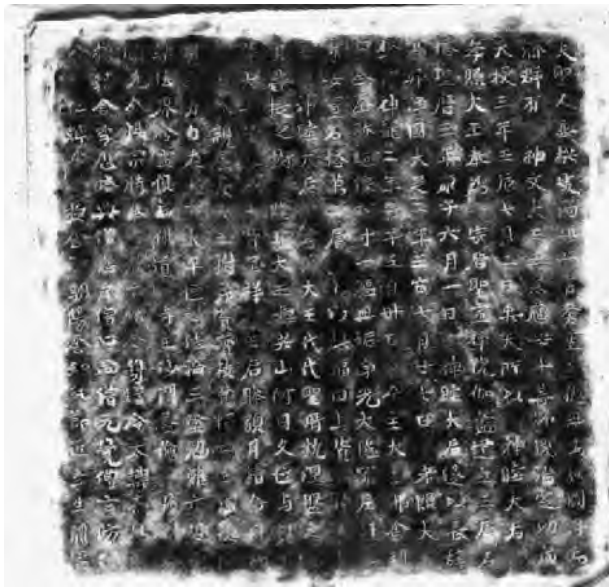


사진 5. 황복사지 외함 명문

몸이 달의 정령과 같고 수명이 겁수와 같기를 빈다. 내외 친속들은 옥수처럼 장대하고 보물가지처럼 무성하게 열매 맺기를 빈다.

또한 범왕, 제석, 사천왕은 위덕이 더욱 밝아지고 기력이 자재로와져 천하가 태평하고 항상 법륜을 굴려 삼도의 중생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육도중생이 즐거움을 받으며 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불도를 이루기를 빈다. 사주 사문 선륜, 소판 김순원과 김흥종이 특별히 왕명을 받는다. 승 영준, 승 영태, 대나마 아모, 대사 계역, 탑전은 승 혜안, 승 심상, 승 현방, 대사 일인, 대사 전극, 사지 조양, 사지 순절이다. 만든 이는 계생과 알온이다.⁵⁾

상기 내용과 같이 출토된 金銅舍利函 뚜껑의 記銘에 의하면, 「신문대왕이 천수 3년(692)임진년 7월 2일에 흥(薨)하시어 신목태후와 효조(소)대왕은 종묘의 신성한 명령을 위해 삼층석탑을 세웠으며, 성력 3년(700) 경자년 6월 1일에 신목태후가 세상을 났으며 대족 2년(702) 임인년 7월 27일에 효조대왕도 승하하시고 신룡 2년 병오(706, 성덕왕 5년) 5월 30일에 성덕왕이 불사리 4과, 순금제 미타상 1구와 무구정광대다나니경 1권을 석탑 2층에 안치한다」라는 기록으로 볼 때, 3층 석탑은 효소왕 원년(692)부터 성덕왕 5년(706) 사이에 신문왕 등 전대 왕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건립하였는 것으로 생각된다. 황복사는 의상이 29세(654)에 황복사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므로, 황복사는 진덕여왕대에 창건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 또한, 황복사에 종묘가 있었다는 것은 사찰이 종묘의 기능을 맡기도 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선덕여왕 대에 세워진 영묘사의 기능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⁷⁾

세 번째 문자자료는 발굴 조사 전 남쪽 논둑에 반파된 상태로 확인된 2기의 귀부에 사용된 비문으로 대부분 유실되고 12개편이 수습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과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5) 임세운, 2014,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발견 금제여래좌상 연구」, 『美術史學研究 Vol.281 No.281』.
6) 김복순, 1996, 「의상과 황복사」,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147.
7) _____, 2018, 「황복사와 낭산」, 『(재)성립문화재연구원 2018년 신라문화특강』.

보관 중이다. 두 종류의 비편은 행서로 쓰인 비편을 제 1비, 해서로 쓰인 비편을 제2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1비가 7편, 2비 1편이 판독 대상이 되고 있다.

〈표 1〉 이전 황복사지 출토 비문내용(출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1992)

<1> 之於」 於」	<2> 體困緣」 度」	<3> 玄通」 花開功德」 出銀表」	<4> 遊林」	<5> 際 梵響
<6> 聖神忠寺令伊」 伊浪臣金順」 漠」	<7> 臣漢功」 奈麻新金季」	<8> 令」 德大宗寺」 令」		

그리고 이번 발굴조사 과정에서도 4점이 비편이 수습되었다. 비편은 10호 배수로의 남-북 선상 북쪽 끝단 바닥면에서 「△奉 △…△敎」 5자의 비편 1점이 수습되었으며, 지표에서 「眞」과 「神」자가 음각된 1자의 비편 2점이 수습되었다.

기와의 자료를 분석한 논문에서 제1비와 제2비에 기록된 인물의 기재방식이 성덕대왕신종명(771)이나 황룡사찰주본기(872) 성전 관원의 기록과 흡사하며, 이는 봉덕사와 황룡사의 예로 볼 때 황복사의 성전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⁸⁾



사진 6. 발굴조사 출토 황복사지 비편

네 번째는 사명 및 명칭과 관련된 문자자료이다. 전술한 것과 1937년 수습된 ‘황복’, ‘왕복’ 명 기와는 단지 낭산 동쪽에서 수습하였다는 내용만 있어 그 출토지가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사명과 관련된 문자자료 확보를 위해 출토된 기와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사명과 관련된 자료는 1차 조사에서 확인된 ‘정(?)원사’(鄭(?)元寺)명 기와와 3차 조사에서 출토된 ‘인백사’(仁伯寺)명 기와가 전부이며, 황복사명의 기와는 확인되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기와는 차륜문과 함께 정(?)원사명을 타날한 보편적인 고려시대 암키와에 해당하며, 인백사명 기와는 세로로 2줄 구획한 뒤 내부에 ‘仁伯寺’라고 새긴 타날판을 타날 한 고려시대 암키와편이다. 확인된 사명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문헌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사명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볼 때 황복사지 폐사 후 사용된 사명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김복순, 2018, 주7)의 전거서.



사진 7. 정원(?)사명 기와



사진 8. 인백사명 기와



사진 9. 황복사지 출토 목간

사명 외에 명칭과 관련된 기와편은 안압지와 황룡사지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 습부정정명 기와이다. 1차 조사지역의 남북도로와 조사지역 일부지역에서 확인된 습부명 기와는 習府井井, ‘習部井井’명으로 이 종류의 기와가 다량 출토되었다.⁹⁾

단일 유적에서 습비부명의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된 사실은 이 유적이 『삼국사기』잡지 제7 관직상에 보이는 6부 소감전의 습비부(習比部)와 관련된 관청이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¹⁰⁾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조사의 연지 내부에서 출토된 목간 1점이다. 먼저 목간의 재질은 소나무로 명문은 ‘上루 (또는 軍)寺迎詔抄彌++一年’으로 판독되고 있으며, 내용은 ‘왕께서 일찍이 절에 영(조서)을 내린 것을 사미승(승려)들이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다른 뜻으로도 현재 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 20살(한국 나이 21살)이 되어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비구(승려)가 된 ‘영담’이라는 사미승에게 보내는 물품 꼬리표일 수 있다. 또 이 목간은 승려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확

인된 내용과 목간의 끝부분에 뚫려있는 구멍 등을 통해 그와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5. 맺음말

경주 전황복사지는 1~5차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차 조사에서는 폐왕릉지에

9) ‘習部井井’, ‘習府井井’ 명문은 월성과 안압지에서 확인된 4가지 타날문 형태로 확인된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명문 또한 4가지 유형이 모두 확인된다.

10) 『삼국사기』잡지 제1 제사조에 큰 제사는 삼산 중에서 나력산(奈歷山)의 습비부(習比部)에서 지낸다고 하였다. 여기서 습비부에 있는 나력산은 신라의 중악 진산인 낭산을 지칭하므로 이와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대한 기존 연구자료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존 왕릉은 폐기되거나 도괴된 왕릉으로 추정하였고, 그 위치를 열상으로 석재가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보았다. 그러나 열상의 왕릉석재 위치는 8~9세기 건물지 및 담장이 위치하고 있어 왕릉이 조성되기 힘든 공간이었고, 석재 또한, 미완성의 가공 석재들이 다량 확인되었다. 특히 황복사지 금당의 십이지신상이 이곳에서 옮겨가 재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황복사지 금당의 십이지신상은 별도의 왕릉에서 옮겨오고 폐왕릉지의 십이지신상은 능지탑으로 옮겨 간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황복사지 중심사역에 대한 2~5차 발굴조사 결과 초기 의상대사가 출가할 당시인 654년의 남-북축선상의 창건가람이 확인되었고, 이후 황복사지삼층석탑이 조성되면서 동-서가람으로의 변천이 이루어졌다.

황복사지에서 출토된 문자자료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첫째는 1942년 삼층석탑 해체수리복원과정에서 출토된 금동사리함 외함 뚜껑에 기재된 내용으로 신문왕과 신목태후, 효소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덕왕이 삼층석탑을 세웠다는 기록으로 그 년대는 692~705년 사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복사지에서 확인된 2기의 귀부에 사용된 비문에 대한 내용이다. 편 대부분은 유실되어 일부만 확인되나 2개체의 비편이 일부 남아 있으며, 이번 발굴조사에서도 일부 편들이 확인되었다. 비문의 내용이 일부만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사천왕사에서 확인된 비편의 내용으로 볼 때 황복사지 역시 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볼 때 황복사지는 신문왕의 원찰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서쪽의 귀부는 신문왕과 관련된 비일 가능성이 높고, 동쪽 귀부는 사찰의 건립과 관련된 사적비로 추정된다. 세 번째는 사명 및 명칭과 관련된 기와가 출토되었으나 황복사명의 기와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 정(?)원사명이나 인백사명의 기와편만이 확인되어 사명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4차 조사지역 연지에서 출토된 목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내용의 일부가 확인되지 않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황복사지 문자자료 발표를 통해 연지에서 출토된 목간자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며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 考古美術同人會, 1968, 「新羅三山調査(第一次)」, 『考古美術』第九卷 第五號(通卷94號).
- 考古美術同人會, 1968, 「慶州 傳皇福寺址의 諸問題」, 『考古美術』第九卷 第八號(通卷97號).
- 강우방, 1973, 「신라십이지상의 분석과 해석」, 『불교미술』1집, 동국대박물관.
- _____, 1990, 「통일신라 십이지신상의 양식적 고찰」, 『원융과 조화』(한국고대 조각사의 원리), 열화당.
- _____, 1996, 「陵旨塔 四方佛 塑造像의 考察」, 『新羅와 狼山』,
- 강봉원, 2015, 「신라의 벽화 고분과 화상석묘 존재 가능성 고찰 - 신문왕릉과 황복사지 위치비정을 중심으로-」, 『新羅史學報』33.
- 김복순, 1996, 「의상과 황복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김용성, 2012, 「신라 십이지신장상 호석 능묘의 변천」, 『한국고대사탐구』1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김용성·강재현, 2012, 「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 『야외 고고학』제 15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 藤島亥治朗, 1930, 「新羅王京建築史論」, 『建築雜誌』44.
-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1985, 『新羅狼山遺蹟調査』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6, 『韓國의 寺址 시·발굴조사보고서 경주 미탄사지 I·II』
- 박광열, 2018, 『신라 중고기 및 중대왕릉의 재해석』, 제46회 신라문화특강, (재)성림문화재연구원.
- 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고분지 정비 유적 慶州 皇福寺址 I』, 2021,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傳황복사지) 정비 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 임세운, 2014,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발견 금제여래좌상 연구」, 『美術史學研究』
- 윤경렬, 1988, 「십이지신상이야기」, 『경주박물관학교교본(1)』, 경주박물관학교
- 張忠植, 1985, 『新羅狼山 遺蹟調査』,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 齋藤忠, 1938, 『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 黃壽永, 1996, 「新羅 狼山の 陵旨塔에 대하여」, 『新羅와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여주 파사성 출토 목간

김정인(한성문화재연구원)

여주 파사성 출토 목간

김정인(한성문화재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파사성 9차 발굴조사
 3. 목간의 출토 현황
 4. 여주 파사성 목간 판독안
 5. 맺음말
-

1. 머리말

여주 파사성(婆娑城) 출토 목간은 파사성 9차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집수시설인 1호 집수지의 가장 하단에서 확인되었다. 파사성은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의 파사산(해발 230.4m) 정상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둘레는 약 943m에 걸쳐 축성한 석성(石城)으로 1977년 사적 제251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남한강의 주요 나루 중 하나였던 이포나루의 배후에 해당하는 곳으로 남한강의 상하류를 한눈에 조망하며 감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 시기 정확한 축성이나 사용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조선시대 전기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이미 옛산성(古山城)으로 기록되어 있어 폐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남한강 유역 방어를 위한 파사성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595년(선조 28) 3월에 유성룡의 건의와 비변사의 요청으로 승군 의엄(義嚴)을 도총섭(都摠攝)으로 임명하여 수축하도록 하였다. 의엄은 절의 스님들을 동원하여 성 안팎에 집과 둔전을 마련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修築)하여 1597년 3년만에 완공하였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에는 방어의 주요 거점이 북방으로 향하면서 중요성이 줄어들어 조선시대 후기에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시 퇴락하였다.

파사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긴급수습조사를 포함하여 총 9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999년 긴급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두 8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1~7차는 성벽과 문지, 장대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8차 조사를 통해 처음 성내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9차 발굴조사는 8차 시굴조사지역 중 사지점에 대해 실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목간이 출토된 1호 집수지를 중심으로 발굴 현황과 조사 내용 등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2. 파사성 9차 발굴조사

1) 파사성 9차 발굴조사 현황

이번 9차 발굴조사는 8차 시굴조사 당시 추정 집수지가 확인된 사지구를 중심으로



사진 1. 여주 파사성 위성사진(다음 맵 참조)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지역은 파사성의 남문지 안쪽에 형성된 완경사면에 해당하며 파사성 정상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가지능선부 사이에 형성된 곡부지형에 해당한다. 곡부의 중심인 1호 집수지 일대는 평탄지를 이루고 있고 그 좌우로 완경사의 가지능선이 자리하고 있다. 파사성 내에 많지 않은 평탄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집수지 2기, 부석유구, 담장렬 3기, 건물지 4기, 온돌유구 3기, 구상유구 1기, 배수로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를 통해 서남쪽의 2호 집수지와 건물지가 조사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어 조사범위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아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구의 배치 양상은 중앙의 1호 집수지 주위로 부석시설과 담장렬이 부속시설로 배치되고, 집수지의 주변 능선부를 정지하여 초석 건물지와 온돌시설을 갖춘 주거지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쪽 능선부의 3, 4호 건물지는 중복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3호 건물지의 폐기 이후 4호 건물지와 3호 담장렬이 조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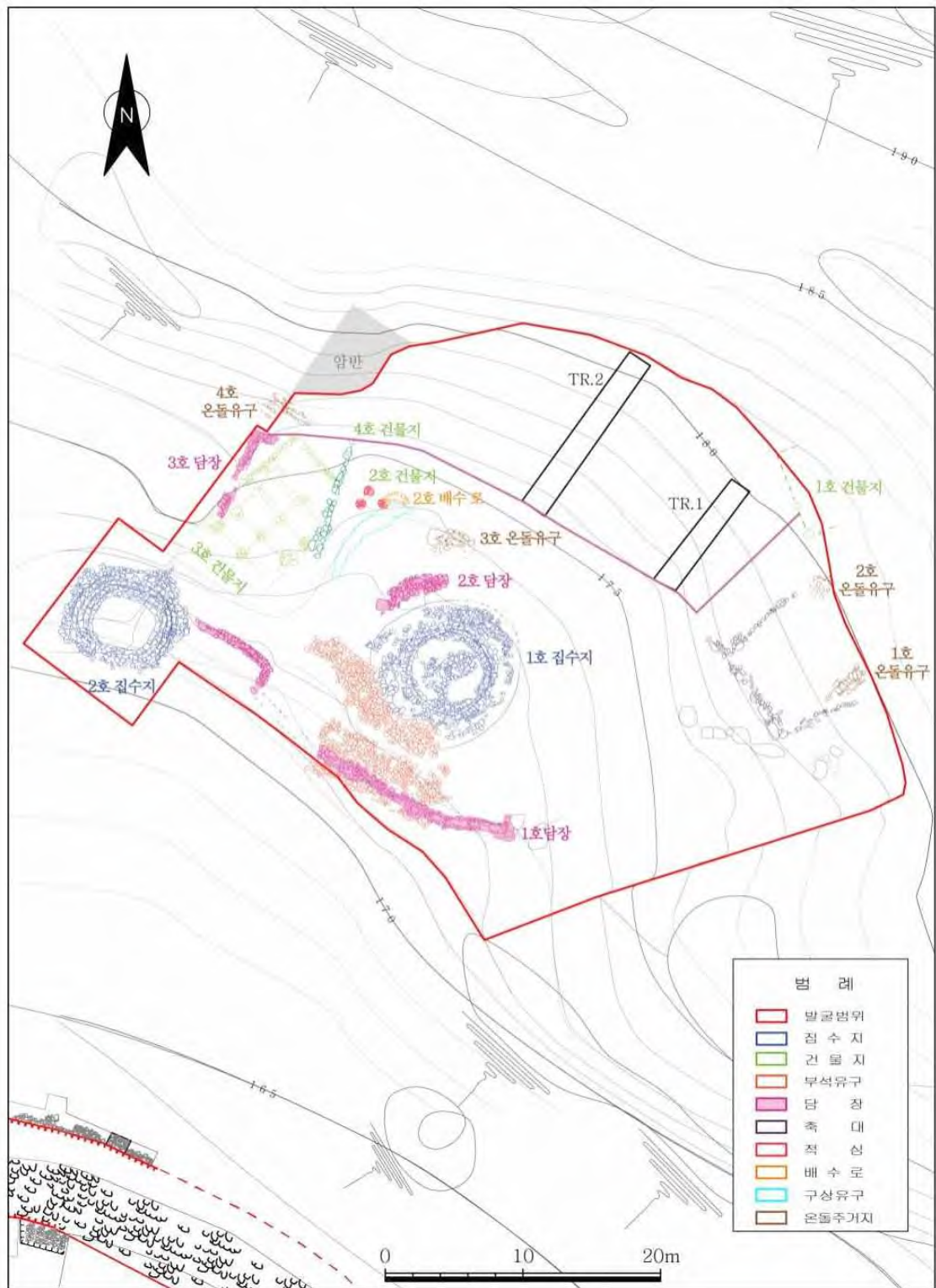
집수지는 중앙의 1기와 조사지역 서남쪽에서 1기가 각각 확인되며, 암반 지형의 능선 하단 곡부 상에서 조성된 공통점을 보인다.



사진 2. 9차 발굴조사 지역 원경(서쪽에서; □ 조사지역)



사진 3. 9차 발굴조사 지역 전경(직상방)



[도면 1] 여주 파사성 9차 발굴조사(사지구)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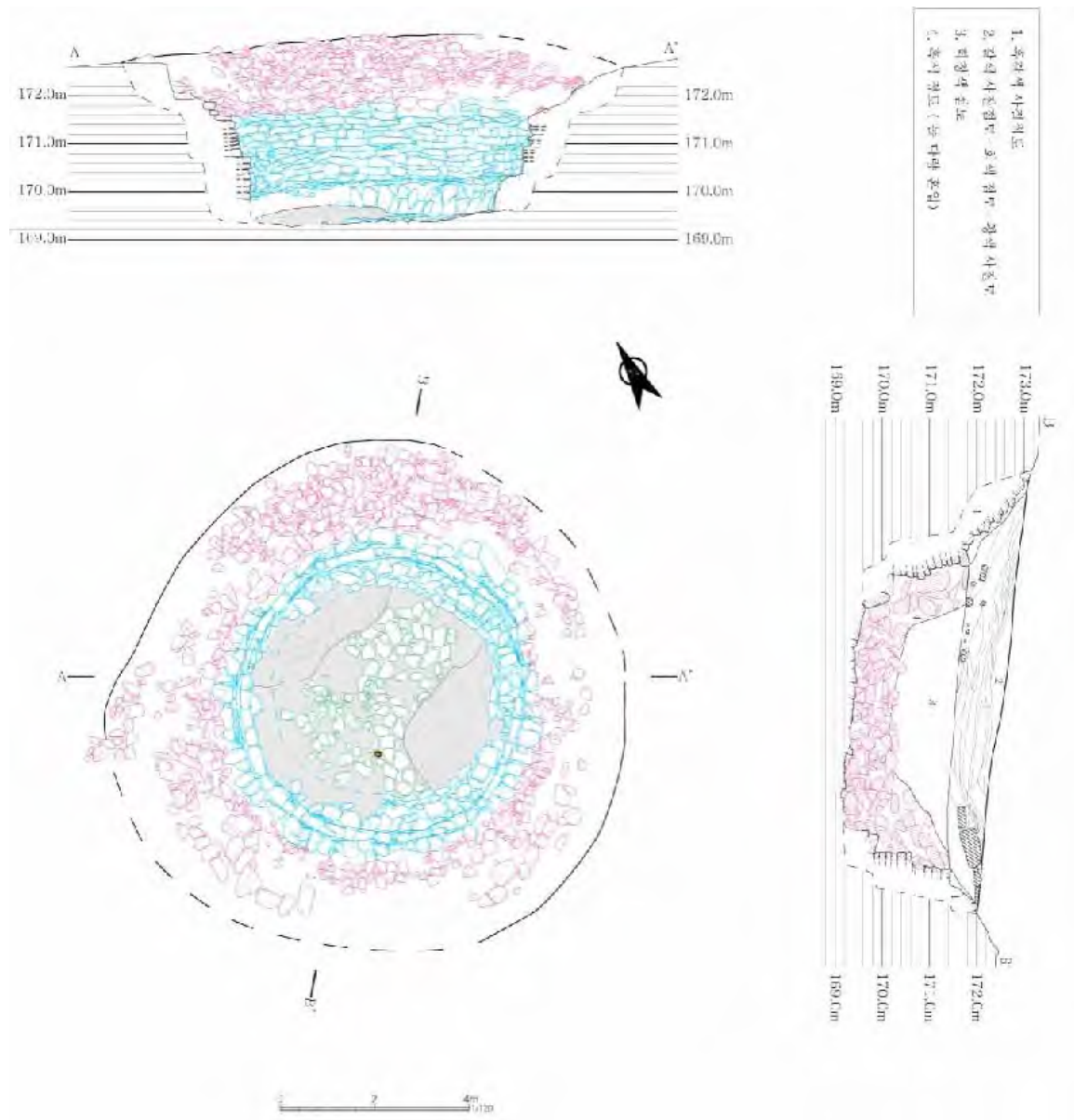
2) 파사성 1호 집수지

1호 집수지는 조사지역 중앙 곡부 상에 위치하는데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3단 이상의 석축을 계단식으로 쌓아 조성하였다.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지름 8.2m에 잔존 최대 깊이 4m의 규모이며, 4단 이상의 석축을 계단식으로 쌓아 조성하였다. 남쪽 외곽 지역에는 부석시설을 하였는데 집수지의 부속으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시설에 인접한 곳으로는 길이 70cm 내외의 대석을 놓았다. 상면은 전체적으로 붕괴가 심하나 2~3단의 잔존 상태는 양호하다. 바닥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1단은 할석을 세워쌓아 벽면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토 아래로 모래가 다수 섞인 근래의 갈색 사질토층을 걷어내자 시굴 당시 확인된 호안석축 안쪽으로 대대적으로 붕괴에 의해 매몰된 집석층이 확인되었다. 집석층은 하단의 흑갈색, 암회청색 점토와 결합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몰의 정도가 심하다. 점토와 집석층을 순차적으로 걷어내면서 하강하여 호안석축의 벽면을 조사하였는데 벽면의 구성 방법이 1단과 2·3단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상층인 4단의 경우 붕괴되어 대부분 내부의 적석다짐층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정확한 축조 형태를 알기 어렵다. 북쪽을 중심으로 일부 기단석이 잔존하나 붕괴가 매우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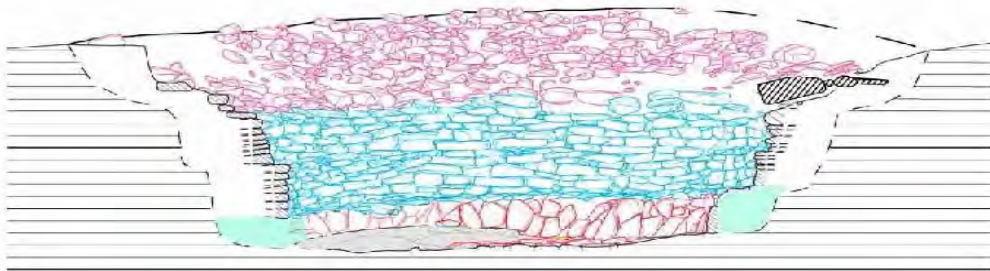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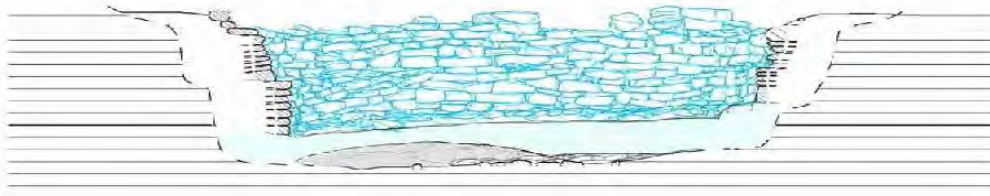


사진 4. 1호 집수지 조사 후 전경(남서쪽에서)



[도면 2] 여주 파사성 1호 집수지 실측도

석축의 중간에 해당하는 아래의 2단과 3단은 평면 원형의 호안석축이 잘 남아있으며 잘 가공된 세장한 판석을 서로 맞물려 ‘品’자형이 되도록 축조하여 벽면을 구성하였다. 각 단은 5단 내외로 축조되는데 대부분 곡선을 이루도록 하였으나 일부는 직선화되어 연결되고 있다. 가장 하단의 1단은 2·3단과 맞물려있지 않으며 회청색의 점토 상에 편평한 판석을 세워 붙이는 방법으로 쌓았다. 개별 입석의 형태는 바닥에 박석과 같은 세장한 형태로 동일한 석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3단과 맞물리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아 개축되면서 새롭게 축조한 단일 가능성이 있다.



[도면 3] 1호 집수지 수개축에 따른 변화 모식도

바닥면은 자연 암반으로 중앙부에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좁은 구(溝)가 형성되어 있고 이 구 안에 박석으로 깔아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바닥의 박석은 자연지형을 따라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넓게 확산되는 형상을 띠고 있다. 입수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바닥면의 형상으로 보아 북동쪽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 5. 1호 집수지 하단 집석층 모습(서쪽에서)

집수지 내부의 출토유물은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 토기편과 기와편, 조선시대 백자 발편, 확석, 목간 등이 출토되고 있다. 목간은 파사성에서 처음 출토되는 유물이다. 기와편은 창해파문과 복합집선문 등이 타날된 편이 소량 확인되고 있는데 집수지와 직접적으로 사용된 유물이

아닌 폐기시 주변에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자기류는 통일신라시대 토기는 적고 백자편의 출토가 많다. 자기편은 집석층과 바닥면에서 출토되는데 특히 바닥의 박석 사이에서 껍기의 흔적이 보이는 ‘右’자명 백자 저부편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주변의 제토 중에도 ‘左’명 백자편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음각 ‘左右’명 백자는 16세기 중기 이후에 경기도 광주 일대 관음리, 곤지암 등의 관요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따라서 선조 25년(1592년) 유성룡의 발의에 따라 승군 의엄(義嚴)이 성을 대대적으로 고쳐쌓았다는 기록과 부합되고 있다.

정리하면 1호 집수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축조되어 사용되다가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이후 대대적인 수축이 있으면서 이를 준설하고 규모를 크게 확장하여 고쳐쌓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면 출토 ‘右’명 백자편	제토 중 출토 백자 및 기와편
	
제토 중 수습 ‘左’명 백자편	제토 중 출토 인화문 토기편

표 2 . 1호 집수지 출토유물

3. 목간의 출토 현황

1호 집수지의 목간은 다단으로 이루어진 집수지의 가장 하단인 1단의 벽석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이 단은 잘 다듬어진 판석을 가로놓혀쌓기하여 맞물려 축조한 2~3단과 달리 비교적 긴 직사각형 형태의 판석을 세워쌓기하여 벽면을 구성하고 있다. 벽석의 안쪽에는 회청색의 점토층(뽕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점토층에 할석을 붙여 하나의 단을 구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목간은 이 벽석 사이에 노출된 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반듯하게 놓여져 있지 않고, 벽석

1) 김귀한, 2013, 「15~17세기 관요 백자 명문의 변화와 그 배경」, 『야외고고학 제17호』. 좌우명 음각 백자가 처음 나타나는 관음리 10호 가마의 운영시기를 1558년 이후부터 1572년 이전을 전후한 시기로 보고 있다.

사이에 있던 좁은 틈에 끼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 양상으로 보아 목간은 집수지의 축조 당시가 아닌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입수되어 벽석의 틈에 놓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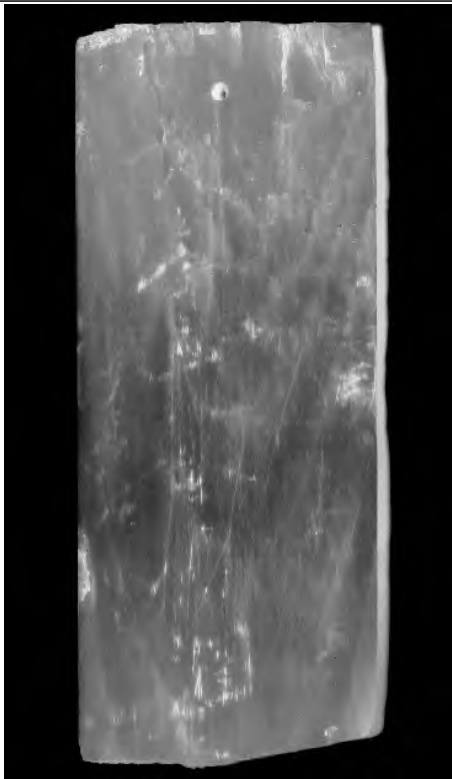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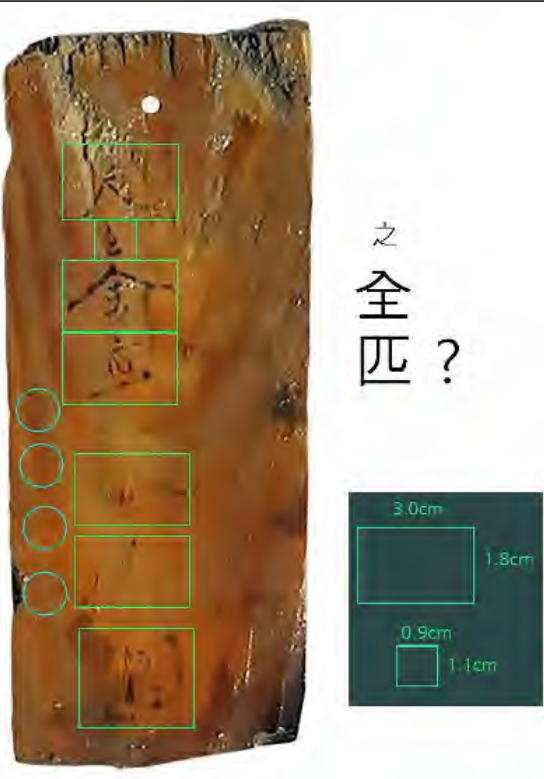


사진 6. 1호 집수지 목간 출토 모습(서쪽에서)

목간의 기본적인 제원과 상태는 다음과 같다.

- 유물명 : 여주 파사성 1호 집수지 출토 목간 1점
- 출토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번지 1호 집수지 내
- 크 기 : 길이 18.9cm, 너비 7.2cm, 두께 5cm 내외
- 특 징 : 장단비 2.6:1의 목판을 사용(참나무류)
 상면 가운데에 원형의 지름 0.5cm 투공이 있음
 좌우 단면이 반듯하게 가공된데 비해, 상하 단면의 경우 거칠게 잘라짐
 목흔은 전면에만 확인되고 후면에는 확인되지 않음
 후면 하단에는 절반 정도 투공하려 한 흔적 있음
 적외선 촬영 결과 전면 목흔 좌측에 희미하게 목흔이 있는 것으로 추정

	
목간 전면 적외선 촬영	목간 전면 출토 직후 촬영

	
목간 전면 적외선 촬영 반전	목간 전면 글자 수 추정

	
목간 후면 적외선 촬영	목간 후면 출토 직후 촬영

4. 여주 파사성 목간 판독안 (적외선 기반 : 2022. 01. 13.)

※판독자 : 이용현, 하시모토 시게루, 방국화 공동 / 文責 및 해설: 이용현

「 ◎ 」

□舍直 金□潤

□□□江

18.9cm×7.2cm×5cm 내외

- * 상하단 완형, 상단에 編綴하는 구멍이 있으며, 木札은 두텁고 단단하다.
외형이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의 일반적 목간과는 이질적이다.
- * 제1,5,7,8,9자는 읽기 어려움, 제5자는 좌변 丿 분위기,
金은 단정은 어려우나 가장 가까워 보임.
- * 목간 내용 :
□舍直(직명) + 金□潤(인명)
□□□江 (강이름 등 기타)
- *어 휘 : 舍直 관련으로는, 客舍直(증정교린지, 일성록, 반계수록) 등이 있다.
이외 庫直은 창고지기, 창고출납 관리, 山直이 산지기를 일컫듯,
直이란 관리자를 뜻하는 우리말 지기의 한자어다.
- * 목간의 성격 : 어떤 건물 혹은 관청 관리자의 名標札일 듯
- * 목간의 시기 : 조선시대일 가능성이 높다.



5. 맺음말

여주 파사성 1호 집수지에서 출토된 목간은 파사성에서 처음 출토된 목간으로 집수지의 가장 하단 벽석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1호 집수지는 고고학적인 중복 양상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초축되어 사용되다가 임란 이후 대대적인 준설과 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간은 조선시대 개축된 이후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목간의 목흔이 희미하여 판독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에 세로방향으로 6글자 이상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 적외선 촬영을 통해 보면 좌측에도 희미하게 4글자 이상을 썼던 것으로 판단된다.

판독을 통해 볼 때 舍直 관련한 어떤 건물 관리자의 名標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쉽게도 목흔이 희미하고 목간이 단독으로 출토되어 비교할 자료가 없어 현재는 추가적인 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난해한 자료의 판독을 맡아주신 이용현, 하시모토 시게루, 방국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태안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양기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37회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

태안 파도리 출수 銘文 木柱

양기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1

태안 파도리 조사 현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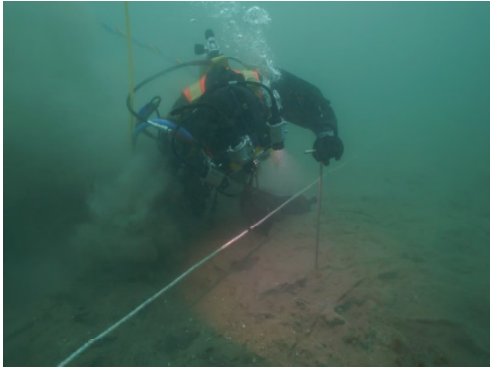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분석

3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성격



Part 1 태안 파도리 조사현황



Part 1 태안 파도리 조사현황

徐兢『宣和奉使高麗圖經』 卷37 馬島

前一石觜入海 激水回波 驚湍洶涌 千奇萬怪 不可名狀
故舟過其下 多不敢近 慮觸暗礁也 有客館曰 安興亭

앞으로 바위 하나가 바다로 잠겨있어, 격렬한 파도가 회오리치고, 여울이 세차게 들이치니, 매우 기괴한 모습을 뭐라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아래를 지나가는 배들이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초에 부딪힐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곳에) ‘안흥정’이라는 객관이 있다.

Part 1 태안 파도리 조사현황

태안 앞바다

- 태안 앞바다는 연중 짙은 안개에 물길이 세고 암초가 산재한 위험한 바다
- 예로부터 난행량(難行梁)이라 불릴 만큼 사고가 잦은 곳
- 관장목은 서울(개경, 한양)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던 항로



Part 1 태안 파도리 조사현황

태안 파도리 인근해역 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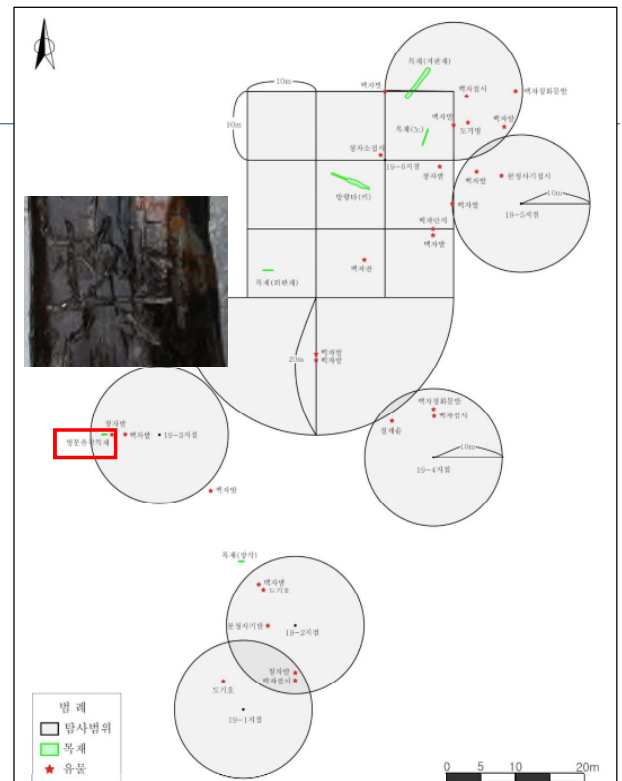
- 2019년 7월 수중문화재 탐사 진행
- 조사지역과 항로연구를 통해 유물집중매장처와 고선박 흔적 발견
가능해역에 대한 잠수조사 실시

Part 1 태안 파도리 조사현황

태안 파도리 인근해역 탐사

- 중심좌표에서 10~15m 줄을 이용하여 원형탐색 실시
- 유물 출수 위치 중심으로 그리드 설치 후 정밀 탐침조사 실시

연번	조사지점	수심	해저면 양상	출수유물
1	19-1,2지점	7m(저)	· 표층은 패각과 소형 석재편이 산재되어 있는 다소 단단한 개흙 · 표층~100cm 다소 단단한 개흙층	백자발 등 8점
2	19-3,4지점	6m(저)	· 표층~20cm 무른 개흙, 20~100cm 다소 단단한 개흙층	명문 목주, 청자발 등 7점
4	19-5지점	6m(저)	· 표층~20cm 무른 개흙, 20~100cm 다소 단단한 개흙층	분청사기 등 3점
5	19-6지점 그리드	6m(저)	· 표층~20cm 무른 개흙, 20~100cm 다소 단단한 개흙층	방향타 등 15점



Part 1 태안 파도리 조사현황

태안 파도리 인근해역 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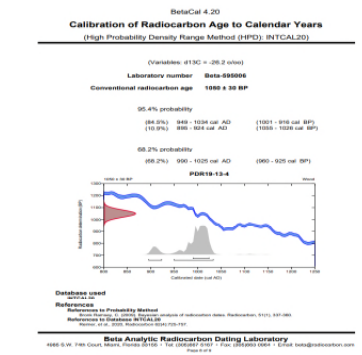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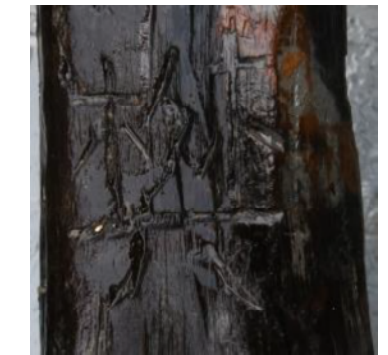


Part 1 태안 파도리 조사현황

태안 파도리 인근해역 탐사



Part 2,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분석



Part 2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분석

1. 형태(形態) 분석

- 길이 81cm , 너비 14cm, 두께 12cm
중량 8.5kg
- 상면은 평평하며, 하단은 말뚝형태
- 앞면은 온전한 형태이나 뒷면은
미생물로 인해 훼손된 상태



Part 2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분석

1. 형태(形態) 분석

- 길이 81cm , 너비 14cm, 두께 12cm
중량 8.5kg
- 상면은 평평하며, 하단은 말뚝형태
- 앞면은 온전한 형태이나 뒷면은
미생물로 인해 훼손된 상태



樊

2-1. 명문(銘文) 판독

- 중앙 상단에 음각한 문자 확인
- 글씨를 음각한 양상은 매우 정교
- 樊(번)으로 판독
- 울타리번(樊) 또는 樊氏로 추정



2-2. 묵서흔(墨書痕) 판독

- 목주 하단 우측에 묵서흔 2자 확인
- 좌편을 '관(官)' 이나 '식(食)'으로 추정
- 제작자의 이름이나 목책의 안녕을 비는 길상구(吉祥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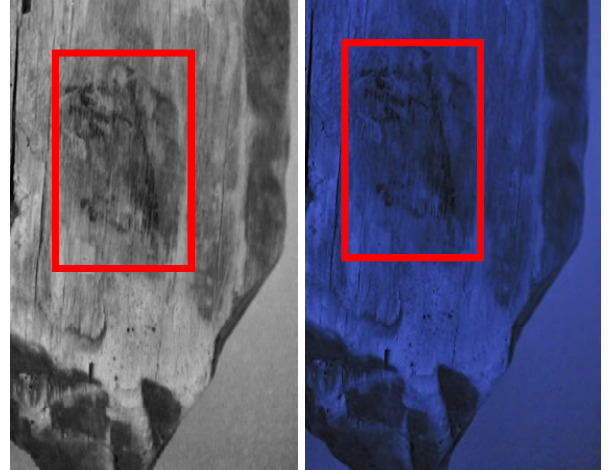


Part 2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분석

2-2. 묵서흔(墨書痕) 판독

- 목주 하단 우측에 묵서흔 2자 확인
- 좌변을 '관(官)' 이나 '식(食)'으로 추정
- 제작자의 이름이나 목책의 안녕을 비는 길상구(吉祥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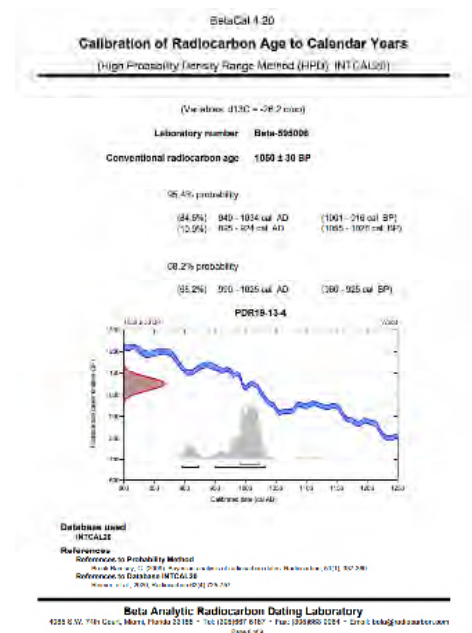
官 食



Part 2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분석

3. 방사성탄소연대분석

- AD 949~1034년
- 태안 파도리 출수 명문 목재 등 4점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 9C말 ~ 11C초 제작





Part 3,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성격

Part 3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성격

1. 해안가 목책 관련

- 형태적으로 상단은 평평하고, 하단은 말뚝형태
- 좌우에는 횡침선이 있는데, 3~4cm 정도 일정한 간격
→ 물이 차오르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
- 樊(번)은 울타리 기준점 표시



Part 3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성격

2. 제의 관련

- 해안가 목책이나 항구의 목제가구 일부로 제의 관련 유물
- 배에서 항해의 안녕을 비는 목기
- 樊(번)은 성씨로 제의와 관련된 사람 표기



Part 3 파도리 출수 명문 목주 성격

3. 선박품 관련

- 명문 목주 발견지점 주변에서 선체편과 배 부속품이 같이 확인되어 배의 부속품이나 선적된 물품으로 추정
- 배로 운반하는 수하물의 전달자나 전달할 지역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진 비표(秘標)로 추정
- 樊(번)은 성씨로 선주(船主)나 수하물과 관련된 사람 표기



감사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시신갈개 부착 문서 소개

권영우·이태희(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시신갈개 부착 문서 소개

권영우(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태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목차

1. 들어가며
 2. 儀鳳三年度支奏抄·儀鳳四年金部旨符
 3. 唐上元年間 西州倉曹司案卷 爲高昌縣申送逃走衛士庸糶價錢事
 4. 나오며
-

1. 들어가며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 투루판 아스타나 무덤 출토 시신갈개¹⁾에서 표면을 감싸고 있던 종이를 분리하여 4매의 문서 잔편을 수습했다. 2매는 의봉4년도 국가재정 운용지침인 支度國用 문서의 일부였으며, 나머지 2매는 逃走衛士 관련 西州都督府 倉曹司 문서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NMK1:1, 2020NMK1:2와 2020NMK2:1, 2020NMK2:2로 편호하고 전자는 기존 연구 성과²⁾에 따라 「儀鳳三年度支奏抄·儀鳳四年金部旨符」로, 후자는 「唐上元年間 西州倉曹司案卷 爲高昌縣申送逃走衛士庸糶價錢事」로 명명했다. 동 문서의 수습 경위 및 원형은 권영우의 별고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진 만큼 여기서는 문서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³⁾

2. 「의봉삼년탁지주초·의봉사년금부지부儀鳳三年度支奏抄·儀鳳四年金部旨符」

2020NMK1:1과 2020NMK1:2는 오쓰 도루(大津透)가 복원·명명한 「儀鳳三年度支奏抄·儀鳳四年金部旨符」(이하 탁지주초)의 앞부분이다. 2020NMK1:1은 민병훈이 분리 전 상태를 판독·소개⁴⁾하여 오쓰 도루의 최종 복원안에 포함되었으나 위아래가 접혀 있었던 까닭에 이번에 누락된 글자를 보완할 수 있었으며, 2020NMK1:2는 이번에 새로 확인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에 분산된 문서 전체를 연결하면 ①의봉3년 度支司가 작성한 명년도 예산편성 및 운용지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타니 탐험대 수집품 중 일부로 “죽제망대(竹製網代)”(본관3978)로 등록되어 있다. 網代(あじろ)는 일본어로 대나무, 갈대 등 띠풀로 직조한 물건을 가리킨다. 본 자료를 수습한 요시카와 고이치로(吉川小一郎)는 ‘アンペラ’로 불렀고 일본에서는 자리(직조물)의 흔적이 남았다고 하여 본 문서를 ‘アンペラ文書’로 불렀다. 이후 국내에도 “암페라(암빠라) 문서”로 소개되었다. ‘アンペラ’는 포투루갈어에서 기원한(또는 추정하는) 외래어로 사초와 식물 또는 그것을 짜서 만든 직조물을 가리킨다. 국립중앙박물관 보고서에서는 시신갈개로 또는 자리로 수정했다.

2) ‘의봉삼년탁지주초·의봉사년금부지부儀鳳三年度支奏抄·儀鳳四年金部旨符’로 명명한 것은 일본의 오쓰 도루(大津透)다. 그는 오가사와라 센슈(小笠原宣秀), 니시무라 겐유(西村元佑), 이케다 온(池田溫) 등의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에노모토 준이치(榎本淳一)와 함께 류코쿠대학 문서 단편을 맞춰 안권의 복원에 성공하고 본 문서가 『당육전唐六典』 등 에 기록된 ‘지탁국용支度國用’이자 그 시행부라는 것을 확인하고 ‘의봉삼년탁지주초·의봉사년금부지부儀鳳三年度支奏抄·儀鳳四年金部旨符’로 명명하였다. 이후 아스타나230호 무덤 및 아스타나227호 무덤에서 출토된 잔편 및 민병훈이 소개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시신갈개를 보완하여 총 35개 조문을 확인했다.

3) 본고는 국립중앙박물관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고문자 I - 투루판(吐魯番) 지역의 한문자료』(국립중앙박물관, 2020)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4) 민병훈·안병찬, 「國立中央博物館 투르판出土文書 管見」, 『美術資料』 56(1995), pp. 156-180.

침 보고서로 奏抄⁵⁾, ②의봉4년 金部司가 각주(西州)로 본 지침을 하달한 시행부인 旨符, ③서 주도독부 倉曹司가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문안을 연결한 하나의 案卷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唐儀鳳四年西州倉曹司案卷爲處分支度國用金部旨符事」라고 할 수 있다.

탁지주초는 당 전기 재정 운용의 실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당 전기 재정은 ‘量入制出(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정함)’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⁶⁾ 탁지사의 지탁국용 작성, 즉 예산계획 수립의 1차 자료는 計帳이다. 매년 말 戶主는 호 내 현원 및 변동 이력 등을 기록하여 手實을 작성했고, 里正은 수실을 모아 계장을 작성했다. 현은 향을 단위로 계장을 취합하여 주로 보냈고, 주는 5월 30일까지 중앙(상서성)에 제출했다.⁷⁾ 都事의 주관 하에 諸司令史의 검토를 거치면 호부사가 丁數, 조·용·조 수를 계산한 뒤 7월 모일에 탁지사로 보낸다. 당대 재정 수입의 근간은 정세인 조·용·조로, 조·용·조는 호당 丁의 수마다 定額 부과했기 때문에 인원수를 파악하면 조세수입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탁지사에서는 중앙 및 지방 각 관사의 예산집행 현황(지출 및 잔여분) 및 수요분을 파악했다. 본 탁지주초의 내용 중 도독, 자사의 파견 및 제왕의 우대비용(19조), 양경제사의 잡절채(32조), 목감의 포상 재원 등 운영경비(34조)는 8월 상순까지 집행현황⁸⁾을 탁지 또는 탁지, 금부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탁지사가 8월 상순까지 중앙 및 지방 각 관사로부터 예산 집행 현황 및 명년도 수요분을 확인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탁지사는 지탁국용을 작성했다. 지탁국용의 보고, 즉 탁지주초는 규정에 의거하여 10월 30일 이전까지 상주해야 했다.⁹⁾ 본 탁지주초도 보고일이 ‘678년 10월 28일(儀鳳三年十月廿八日)’로 해당 규정이 준수되었음을 볼 수 있다.

탁지주초의 시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탁지사에서 작성한 탁지주초는 상서성이 보고하고, 문하성의 심사를 거쳐 황제의 재가를 받았다. 본 문서의 경우 監國으로서 황제를 대신했던 황태자 章懷太子에게 올린 것으로, 작성책임자는 度支員外郎 狄仁傑이고 보고자는 상서좌복야 劉

5) 주초는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 형식 가운데 하나를 말한다.

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중(신서원, 2005), p. 21. 卷8 門下省 侍中 “신하(下)가 황제(上)께 문서를 올리는 형식에는 6가지가 있다. 첫째 奏抄다.(제사, 국가의 재정계획(支度國用), 6품 이하의 관직 수여, 流刑 이상의 죄를 판결하거나 除名·免官·官當해야 하는 경우 모두 주초로 한다.)(凡下之通于上, 其制有六: 一曰奏抄.(謂祭祀, 支度國用, 授六品已下官, 斷流已上罪及除免官當者, 並爲奏抄.))”

6) 이하 지탁국용의 작성 과정에 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고.

박근칠, 「唐 前期 豫算編成의 根據와 節次」, 『中國史研究』 14-1(2001), pp. 75-100.

7) 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上(신서원, 2003), p. 348. 卷3 「尚書戶部」 度支郎中 “무릇 天下 制勅 計奏의 數量과 省符·宣告의 時期는 대개 年末로서 裁決한다. 京師의 諸司는 모두 4월 1일까지 都省에 바친다. 天下 諸州에서는 本司가 推校하고 勾官에게 주어 勾官이 審査한 후에 連署하고 封印한다. (그리고 다시) 計帳使에게 주어 都省에 바친다. (그런 후에) 항시 6월 1일에 都事가 諸司令史를 모아 對覆하여 만일 隱漏하여 不同함이 있으면 모두 考課에 붙인다.(凡天下制敕·計奏之數, 省符·宣告之節, 率以歲終爲斷. 京師諸司, 皆以四月一日納於都省. 其天下諸州, 則本司推校以授勾官, 勾官審之, 連署封印, 附計帳使納於都省. 常以六月一日都事集諸司令史對覆, 若有隱漏·不同, 皆附於考課焉.)” 위에서 상서도성의 도사가 제사영사를 모아 각주의 계장을 검토하는 일자가 6월 1일이었던 것은 각주의 계장사는 5월 말일 이전에 계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탁지주초에는 “破用見在” 또는 “破除見在”라고 하였다. 破用 또는 破除는 용도에 따라 사용한 지출분을 말하며 見在는 현재 잔액분을 뜻한다.

9) 김택민·하원수 주편, 『天聖令 譯註』(해안, 2013), 卷22 「賦役令」, pp. 132-133. 〈舊1〉 “무릇 과는 매년 계장計帳이 오면 호부가 종류[별 내역]를 갖추어 적어 탁지[사]에 첩을 보내고, (탁지사가) 내년에 안배할 예산을 10월 30일 이전까지 상주한다. 만약 반드시 여타 물품을 대체해서(折) 받아야만 한다면 또한 미리 쓸 것을 건적하여(支料) [상주와] 동시에 처리하도록 한다. [이후] 만약 나라(軍國)에 필요한 것인데 저장하고 있는(庫藏) 물품이 현재 없는 경우, 그 상황을 기록해 상주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상주하지 않고] 바로 [필요한 물품을] 할당하여 징수할(科下) 수 없다.(諸課, 每年計帳至, 戶部具錄色目, 牒度支, 支配[來]年事, 限十月三十日以前奏訖. 若須折受餘物, 亦預支料, 同時處分. 若是軍國所須, 庫藏見無者, 錄狀奏聞, 不得則科下.)”

仁軌, 상서우복야 戴至德, 호부상서 許圜師, 호부시랑 王德眞이었다. 태자에게 보고한 문서였던 까닭에 문하성이 아닌 太子左春坊에서 심사했다. 황태자의 재가를 받은 주초는 다시 상서성으로 내려와 상서도성의 都事가 접수하고 左司郎中員外郎이 검토(勾檢)하여 서명 및 문서 제목(符目)을 확인한 뒤, 시행부서로 전달한다. 본 탁지주초의 시행부서는 금부사로, 금부사에서는 符¹⁰⁾를 작성하여 중앙 및 지방의 관사로 전파했다. 본 탁지주초에서 지부의 수신은 서주도독부로, 녹사사가 접수하여 담당 관사인 창조사로 배부했고, 창조사는 호조사로 關文을 보내 공유하고 속하 5현(高昌縣, 柳中縣, 交河縣, 蒲昌縣, 天山縣)에 하달했다. 서주에서의 접수 및 처리일자는 의봉4년 2월 27일로 하루가 소요되었다.

금부사의 지부 작성일자가 결실되어 있지만 10월 28일 보고 후 서주에서 접수하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이와 같은 행정 소요기간은 장안과 서주 사이의 거리 뿐 아니라 전국에 배포가 위해 수많은 사본을 제작해야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중앙 및 지방의 각 관사로 지부가 송달되었으며, 지부를 수령한 관사 역시 다시 사본을 제작하여 각 예하 단위로 하달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본이 생산되었다. 실례로 아스타나 29호 무덤에서는 본 건과는 구분되는 탁지주초 잔편이 발견되었다.¹¹⁾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은 매우 번거로웠으며 비용 및 시간 소모가 컸다. 이에 반해 내용은 반복되는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이와 같은 방식은 736년(開元24) 長行旨條의 반포로 이어졌다.¹²⁾ 장행지조는 탁지주초 및 지부의 내용을 常例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각 관사는 장행지조를 기초로 예산을 운용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탁지사가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전달했다.¹³⁾

그럼 이하 이번에 확인한 조문을 살펴보겠다. 탁지주초는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一’로 시작한다. 2020NMK1:1에서 5개 조문을, 2020NMK1:2에서 5개 조문을 확인하여 지금까지 총 39개의 조문이 확인되었다(전체 조문 내용은 [별표1]을 참조). 2020NMK1:1과 2020NMK1:2에 수록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10) 符는 상급관서가 속하의 관서로 보내는 하행문서다.
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상(신서원, 2003), pp. 136-138. 卷1「尙書都省」“무릇 위에서 아래로 미치는 문서는 그 제도가 여섯 가지가 있으니 제·칙·책·영·교·부라고 한다. (천자가 내리는 것을 제·칙·책이라 하고 황태자가 내리는 것을 영이라 하며, 친왕·공주가 내리는 것을 교라고 한다. 상서성에서 주로 내리고, 주에서 현으로 내리고, 주에서 향으로 내리는 것은 모두 부라 한다.)(凡上之所以逮下, 其制有六, 曰: 制·敕·冊·令·教·符.(天子曰制, 曰敕, 曰冊. 皇太子曰令. 親王·公主曰教. 尙書省下於州, 州下於縣, 縣下於鄉, 皆曰符.))”
- 11)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武漢大學歷史系, 『吐魯番出土文書(圖文本)』(參)(北京: 文物出版社, 1996), pp. 353-356. 「唐處分庸調及折估等事殘文書」(64TAM29:110/1~110/6, 120(a)), 「唐西州都督府殘文書」(64TAM29:126(a))
- 12) 『新唐書』卷51「食貨」1, pp. 1345-1346. “中書令 李林甫가 ‘租庸, 丁防, 和糴, 春綵, 稅草 관련 법령이 없어 매년 旨符를 만들어 사신을 보내 포고합니다. 종이 비용이 50여 만이며 조목이 많아 처리하는 데 해를 넘기니 이에 朝集使의 의견을 수합하여 혁파하고 長行旨를 만들어 조집사에게 주어 지부를 보내 매년 여기에 근거하게 하십시오. 재가하여 역을 통해 전달하면 주마다 종이 2매면 될 것입니다’라고 건의하였다.(中書令李林甫以租庸·丁防·和糴·春綵·稅草無定法, 歲爲旨符, 遣使一告, 費紙五十餘萬. 條目既多, 覆問踰年, 乃與採訪朝集使議革之, 爲長行旨, 以授朝集使及送旨符使, 歲有所支, 進書附驛以達, 每州不過二紙.)”
- 13) 장행지조의 시행으로 행정처리는 간소해졌지만 재정 운용지침은 고정화되면서 국가재정의 경직화와 탁지사의 재정장악 능력 약화라는 문제가 발생했다.(大津透, 『日唐律令制の財政構造』(東京: 岩波書店, 2006), pp. 75-77 참조.)



도1. 2020NMK1:1

[2020NMK1:1]

[전 결]

- 01 ☐ 鄉土所出. 其折造綾羅乘(剩)等物, 并雇染價
 02 ☐ 所 ☐ 庸調多少及估價高下. 求覓難
 03 ☐ 並 ☐ [] 申 [] 度支金部.

…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 . (용·조 물품의) 대체 납부로 조성한 능·라 가운데 남은 물품과 고용비용·염색비용의 … 용·조의 다소 및 가격고하를 … . 구하기 어려운 경우 … 아울러 … 탁지사와 금부사에 보고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봉3년 탁지주초 가장 앞부분이 결실되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綾·羅 등의 제작 비용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추정된다. 국가 소용의 고급 견직물은 庸·調의折造로 충당했다.¹⁴⁾ 이때 제작에 수반되는 염직 등 제공정 비용도 그 안에 포함시켰다. 염직은 생산지에서 진행했던 만큼 각 주에서 비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尙書戶部 度支司 및 金部司에 보고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 04 一 所配桂廣交都督府庸·調等物, 若管內
 05 諸州有路程遠者, 仍委府司量遠近處
 06 ☐ 納訖, 具顯色目, 便申所 ☐. 應支配外
 07 有乘(剩)物, 請市輕細好物, 遞送納東都, ☐
 08 錄色目, 申度支金部.

14) 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上(신서원, 2003), p. 348. 卷3「尙書戶部」度支郎中 “무릇 금은·보화·능·라 따위는 모두 용·조의 대체로 조성한다.(凡金銀, 寶貨, 綾羅之屬, 皆折庸調以造焉.)”(번역 일부 수정)

계주·광주·교주도독부에 배정된 용·조 등 물품은 만약 관할 주 가운데 노정이 먼 경우에는 도독부의 담당 관사에게 위임하여 원근을 헤아려 납부를 마치게 하고 종류와 항목을 갖추어 바로 …에 보고한다. 마땅히 지출에 안배해야 하는 것 이외의 나머지 물품은 경세호물을 구입하여 채송하여 동도로 들고 종류와 항목을 기록하여 탁지사와 금부사에 보고한다.

桂州都督府, 廣州都督府, 交州都督府의 용·조 수납분의 처리 지침이다. 당 전기 각 주에서 거둔 조·용·조는 본주에 저장하는 것(留州), 다른 주로 보내는 것(外配), 兩京(長安과 東都)으로 송납하는 것(送兩京)으로 구분되었다. 본 조문에 언급된 세 도독부는 모두 嶺南道 지역으로 각 도독부가 관할구역 안에서 용·조의 보관 및 운송을 총괄하게 하였다. 도독에게 용·조 수납분의 이동과 저장을 위임한 것은 산지가 많아 교통이 불편하고 이민족 거주지역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배정분 외의 남은 용·조는 輕細好物로 교환하여 東都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둔황에서 발견된 「水部式」에도 계주·광주의 용·조는 揚州를 거쳐 동도로 운송한다는 규정이 있다.¹⁵⁾ ‘경세호물’은 ‘가볍고 정교한 좋은 물건’이란 의미로, 질 좋은 물품을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운송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운송을 마친 뒤에는 度支司와 金部司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09 — 嶺南諸州折納米粟及雜種_支料供足外, 有
10 下濕處不堪久貯者, 不得多貯致令損壞.

영남도 소속 주에서 절납한 미·속 및 기타 곡물[잡종] 가운데 지출분 곡물을 충족하고 그 밖의 것은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하습처에는 다량 저장하여 손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嶺南道 소속 각 주의 절납 양곡 수취분의 보관 규정이다. 지출 후 남은 양곡은 본주에 보관하도록 하되 보관에 적합한 장소에 비축하라는 지침이다. “米, 粟 및 기타 곡물”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미’는 ‘稅米’를 가리킨다. 영남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속 대신 미를 수납하였으며 부과 기준도 달리하였다. 『唐令』(賦役令)에 “매 丁은 租 2石을 납부한다. 영남도 소속 州에서는 세미를 거두는데, 上戶는 1석 2두, 次戶는 8두, 下戶는 6두를 거둔다. 이민족은 하호의 절반을 적용한다.”¹⁶⁾고 하였다. 호 내 丁 수에 따라 징수하는 租와 달리 영남도의 세미는 戶等에 따라 징수했다.¹⁷⁾ ‘하습처’는 『唐令』(倉庫令)에 등장하는 용어로 高燥處(지대가 높고

15) 「水部式殘卷」(P.2507) “桂·廣二府鑄錢及嶺南諸州庸調并和市折租等, 遞至揚州, 詔令揚州差綱部領送都, 應須運脚, 于所送物內取充.” 鄭炳林, 『敦煌地理文書匯輯校注』(蘭州: 甘肅教育出版社, 1989), p. 103.

16) 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上(신서원, 2003), pp. 326-329. 卷3 「尙書戶部」 “과호의 1정마다 조는 속 2석이다. …(중략)… 무릇 영남의 주에서 미를 세로 내는 경우, 상호는 1석 2두, 차호는 8두, 하호는 6두를 낸다. 그리고 이료의 호는 모두 반수에 따른다.(課戶每丁, 租粟二石. …(중략)… 凡嶺南諸州稅米者, 上戶一石二斗, 次戶八斗, 下戶六斗. 若夷獠之戶, 皆從半輸.)”

17) 세미의 성격과 관련하여 히노 가이사부로(日野開三郎)는 호등에 따라 부과한 지방세로 보고 영남도를 조·용·조租庸調 예외 지역으로 파악했다.(日野開三郎, 「嶺南諸州稅米について」,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第12卷-行政と財政-)(東京: 三一書房, 1989), pp.39-62.) 반면 리진슈(李錦綉)는 영남 세미는 국가세수로 일종의 절조折租이며 호등을 기준으로 징수한 것은 북조北朝의 조조징수제가 남긴 영향 때문으로 보았다.(李錦綉, 『唐代財政史稿』第二冊(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pp. 177-179.) 오쓰 도루(大津透)는 「탁지주초」의 본 규정을 근거로 리진슈의 의견을 지지하는 한편, 영남도 내에 조·용·조를 적용하는 주와 세미를 적용하는 주가 구분되어 있었는지 등에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건조한 곳)와 대비되는 말이다.¹⁸⁾

- 11 一 桂廣二府受納諸州課稅者，量留二年應
12 須用外，並遞送納東都。其二府管內有
13 州在府北□庸調等物應送楊府。道□
14 者任留州貯，運次隨送，不得却持南土
15 致令勞擾。每年請委錄事參軍勾會
-----[儉] (봉배서)
16 出納，如其欠乘(剩)，便申金部·度支。若有不同，隨
17 □□附。

계주·광주 두 도독부가 거둬들인 관할 주의 과세는 2년치 수요분[應須用]을 헤아려 남기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채송하여 동도로 들인다. 두 도독부 관할 지역의 주 가운데 도독부의 북쪽에 있는 경우는 (거둬들인) 용·조 등의 물품을 양(주대도독)부로 보낸다. 길이 … 한 경우, 일단 주에 남겨 저장하고 (다음) 운송편이 있을 때 (함께) 보내 남쪽 지역에서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한다. 매년 (도독부의) 녹사참군에게 위임하여 출납을 회계감사하고 만일 과부족분이 있으면 바로 금부사·탁지사에 보고하도록 한다. 만일 서로 다른 경우 … 에 따라 … 첨부하여 … .

桂州都督府와 廣州都督府가 소속 주로부터 수납한 과세의 처리 지침이다. 계주도독부와 광주도독부의 과세는 2년치 수요분을 본주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동도로 보낸다. 이때 주치 북쪽에 있는 주는 도독부로 취합하지 않고 바로 양주로 보내도록 하였는데, 이는 도독부로 취합할 경우, 남쪽으로 내려왔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쪽 지역에서는 운송로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일단 주에 보관했다가 운반편이 있을 때 함께 송부하게 하여 노역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모두 운송의 효율성을 꾀한 것이다. 매년 녹사참군이 출납을 회계하여 부족분과 잉여분을 금부사와 탁지사에 보고하도록 했고, 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기록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결실되어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여기서 “勞擾”는 행정명령 및 지침에 종종 보이는데, 일본 『令義解』주석에는 “모이는 때가 분명치 않아 인민들을 헛되이 움직이게 하는 부류다.(不明期會，妄動人民之類也)”라고 정의하였다.

지적하였다.(大津透, 『日唐律令制の財政構造』(東京: 岩波書店, 2006), pp. 54-55.)

- 18) 김택민·하원수 주편, 『天聖令 譯註』(해안, 2013), 卷23 「倉庫令」, pp. 200-201. <舊1> “무릇 창고에 곡물을 저장하는 경우, 속은 9년을 기한으로 보관한다. 미와 다른 종류의 곡물은 5년을 기한으로 한다. 땅이 낮고 습한 곳(下濕處)에서는 속은 5년을 보관하고 미와 다른 여러 종류의 곡물은 3년을 보관한다. 저장한 지 3년 이상을 경과하면 1곡에 1승의 감모를 허용한다. …(중략)… 만약 땅이 낮고 습하여 稻穀(탈곡하지 않은 벼)을 오래 저장할 수 없는 창고라면 大米(탈곡한 벼)와 糙米(정백하지 않은 쌀, 현미)로 바꾸어 들인다. 조미로 바꾸는 경우, 도곡 3곡을 조미 1곡 4두로 계산하여 절납한다. (諸倉窖貯積者，粟支九年；米及雜種支五年。下濕處，粟支五年；米及雜種支三年。貯經三年以上，一斛聽耗一升；…(중략)… 若下濕處，稻穀不可久貯者，折納大米及糙米。其折糙米者，計稻穀三斛(石)，折納糙米一斛(石)四斗。)”; 위의 책, pp. 181-182. <現1> “무릇 창고는 모두 성 내의 높고 건조한 곳(高燥處)에 설치한다. 창고 옆으로는 도랑을 만들어 물이 빠지게 하고, 아울러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심어 그늘지게 한다. 만약 땅이 낮고 습하여(下濕) (지하에) 교를 둘 수 없는 곳은 건물을 지어 저장한다. …(하략). (諸倉窖，皆於城內高燥處置之，於倉側開渠泄水，兼種榆柳，使得成陰。若地下濕，不可爲窖者，造屋貯之。…(하략).)”

- 18(01) 一 交州都督府管內諸州有兵防應須糧
 19(02) 料，請委交府，便配以南諸州課物，支給三年
 20(03) 糧外，受納遞送入東都，其欽州安海鎮雖
 04 非所管，路程稍近，遣與桂府及欽州相知，
 05 准防人須糧支配使充，其破用見在數，與計
 06 帳同申所司。

교주도독부 관내 모든 주의 군사[병방]에 필요한 양료는 교주도독부에 위임하여 (교주)이남 주에게 바로 과물을 안배하도록 한다. 3년간 소요 양료 이외의 것은 수납·체송하여 동도로 들인다. 그러나 (동도로 체송할 때) 흠주 안해진은 비록 관할구역이 아니지만 이동 경로에서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계주도독부 및 흠주에도 알려 방인 공량소요분만큼을 분배하여 충당하도록 한다. 그 지출분과 남은 것의 수량을 계장과 함께 담당 관사에 동시에 보고한다.

뒷부분은 투루판 문서(72TAM230:46/2)와 연결된다.¹⁹⁾ 본 조항은 交州都督府의 군사비용 안배에 관한 지침이다. 교주 이남 주의 군사비용은 교주도독에게 위임하여 안배한다. 이때 3년간 소요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도로 보내는데, 동도로 운송 시 그 가운데 일부를 덜어 安海鎮의 防人 供糧分을 지급하고 계주도독부와 흠주에 지급내역을 공유하게 하였다. 안해진은 흠주 安海縣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鎮은 지역의 군사 방어 시설이며 防人은 변경의 경계 및 방어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의미한다.²⁰⁾ 해당 내역을 계주도독부와 흠주와 공유하도록 한 것은 안해진은 계주도독부의 지휘를 받고 흠주 관내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 18·19·20행은 오쓰 도루 편호 H'의 1·2·3행과 겹친다. 투루판문서에 있는 글자는 획을 얇게 하여 구분하였다.

20) 게가사와 야스노리(氣賀澤保規)는 西州 부병제를 분석하며 방인은 府兵 병사 또는 兵募로 충당하였다고 본 반면, 와타나베 신이치로(渡邊信一郎)는 『天聖令』 賦役令을 근거로 부병과는 구분되는 존재로, 일반 州府의 농민으로 충원했다고 파악했다.

氣賀澤保規, 『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京都: 同朋舎, 1999), '第2編 後期府兵制の展開と府兵兵士', pp. 195-415 참조.

渡邊信一郎, 「唐代前期における農民の軍役負擔—歲役の成立によせて」,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東京: 汲古書院, 2010), pp. 357-389 참조.



도2 2020NMK1:2

[2020NMK1:2]

- 12 一 庸調送納楊府轉運, [] 綱典部領. 以
 13 官船□課船 [] □還, 並請遞
 14 [] □□楊府庫物, 若
 -----[儉] (봉배서)
 15 府雜用不足, 請府司准一年應須用數,
 16 量留諸州折租市充, 訖申所司. 又准
 17 勅 [] 各依常限, 貯
 18 [] 宜候春水得通船之後, 然
 19(01) [] 州長行即須至東都, 水既長(漲)
 02 □船不可停, 了日速即發□.

용·조를 양주도독부로 전운하여 송납할 경우 [도독부의 관사는] 강·전을 [보내어] 통솔하게 한다. … 관선을 … 과선 … 돌아오고, 아울러 … 체(송)하게 하며 … 양주도독부의 물품 [庫物]으로 (한다.) … 만약 양주도독부의 잡용이 부족하면 담당 관사에서 1년분 소요액만 큼 각주에 남겨둔 절조물(조의 대체물)을 헤아려 매매하여 충당하고, 마치면 소속 관사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칙에 준하여 … 각기 통상적인 기한에 의거하여 … 저장한다. 마땅히 봄에 물이 차서 배가 다닐 수 있는지 살핀 뒤이어야 하나 … 주의 장거리 운송으로 바로 동도까지 도달하게 한다. 물이 차면 … 선박을 머무르지 말고(?) 마치는 날로 속히 출발시킨다.

앞부분은 투루판 문서(72TAM230:46/2)와 연결된다. 19행 후반부와 2행은 이번에 새로 확인한

것이다. 본 조문은 용·조 납부 시 수운 관련 규정이다. 중간 부분이 많이 결실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12행부터 17행 중간까지는 운송 주체와 비용, 그 이후는 운하의 상태에 따른 운송 지침으로 추정된다. 각 주에서 수납한 용·조를 揚州大都督府로 송부할 때는 綱·典이 운송을 지휘한다. 강은 운송의 책임자이며 전은 강을 보좌한다. 강은 각 주의 判司, 즉 7조 參軍 중에서, 전은 현승 이하 관인에서 충임한다.²¹⁾ 운송비용은 양주도독부의 재화(庫物)를 사용하는데²²⁾, 만일 양주도독부의 雜用이 부족한 경우에는 1년간 소요액만큼을 각 주의 절조물을 매매하여 충당한 뒤 해당 관사에 보고했다. 양지평(楊際平)은 “折租市充”을 “折租布充”으로 판독하고 절조한 포로 충당한다고 해석했다.²³⁾ “각기 통상적인 기한(常限)에 의거하여 … 저장한다”는 뒤의 “春水 춘수”로 볼 때, 각 주에서 9월 상순 이후 출발한 용·조가 운하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동절기 등)에 도착했을 경우의 처리 지침으로 생각된다. 『天聖令』 「賦役令」 <구2>조는 “용·조로 징수한 물품은 매년 8월 상순에 각 주로 납입하기 시작하여 30일 안에 끝내도록 한다. 9월 상순에 각각 해당 주에서 (보관할 곳으로) 발송한다.”²⁴⁾고 하였다. 쉬푸젠(許福謙)은 『唐六典』 戶部侍郎 夾註 중 “강남 諸州 가운데 수로로 운송하는 곳이 만일 11월 물이 얇아 독에 오르기 어려운 경우, 4월 이후에 운송한다”는 지침을 근거로 18행 결실 부분을 “若冬月水淺(만약 겨울 이어서 수심이 얇을 경우)”으로 추정하였다.²⁵⁾ 『전성령』 부역령 <구3>조 협주에도 “강남 여러 주에서 수로로 운송하는 곳에서 만일 겨울철에 물이 얇아 埭를 오르기 힘들 경우 4월 이후 운송하여 5월 30일까지 완납하도록 한다”²⁶⁾는 규정이 있다. “물이 차면 선박이 머물 수 없으니 마치는 날로 속히 출발시킨다”는 항행이 가능한 수위일 때는 바로 출발시킨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730년(개원18) 宣州刺史 裴耀卿은 상주문에서 “6월, 7월이 지나 하구에 도착하면 황허 강의 물이 차올라(水漲) 강으로 들어갈 수 없어 1, 2개월 정박했다가 물이 줄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강에 오를 수 있다”²⁷⁾라고 했는데, 본 조항에서 언급한 부분은 운하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

21) 김택민·하원수 주편, 『天聖令 譯註』(혜안, 2013), 卷22 「賦役令」, pp.139-140. <舊5> “무릇 租·調·庸을 낼 때 마땅히 京師로 보내거나 밖으로 배송해야만 할 경우, 각각 주의 判司를 관물 운송대의 綱으로 충임하여 통솔하게 한다. 租는 또 縣丞 이하 (관인)을 차출하여 부(책임자)로 삼(아 그 곡물을 직접 운송하게 하)고 운송을 위탁하거나 편의에 따라 구매하여 낼 수 없다. …(하략). (諸輸租·調·庸, 應送京及外配者, 各遣州判司充綱部領, 其租仍差縣丞以下爲副, 不得僞冒, 隨便糴輸. …(하략).)” 쉬푸젠은 「水部式殘卷」(P.2507) 중 “계주와 광주 두 도독부에서 주조한 동전 및 영남 각 주의 庸·調 및 구입품, 租의 대체품 등을 채송하여 양주에 도착하면 양주는 강·전을 보내 (동)도까지의 운송을 지휘하게 한다.(桂廣二府鑄錢及嶺南諸州庸租并和市折租等物, 遞至揚州訖, 令揚州差綱部領送都)”는 조문을 근거로 제12행의 결실 부분을 “楊州遣”으로 복원하였다.(許福謙, 「吐魯番出土的兩份唐代法制文書略釋」, 『敦煌吐魯番文獻研究論集』第2輯(北京: 中華書局, 1983), pp. 554-555.) 그러나 「수부식잔권」의 해당 조문은 양주 도착 이후 동도까지의 구간을 가리키며 위의 규정은 각주에서 양주까지의 구간으로 차이가 있다. 李錦綉는 “州司遣”로 복원하였다.(李錦綉, 『唐代財政史稿』第二冊(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p. 16.) 위의 해석은 리진슈의 복원안을 참조하였다.

22) 원문의 “庫物”은 곡물과 구분되는 비단, 금속 등의 재화를 의미한다. 『唐律疏議』 卷15 「廢庫」19 조의 제214조 “庫는 器物·兵仗器·綿·絹 등을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23) 楊際平, 「唐前期江南折租造布的財政意義—兼論所謂唐中央財政制度之漸次南朝化」, 『歷史研究』 2011-2, pp. 16-34.

24) 김택민·하원수 주편, 『天聖令 譯註』(혜안, 2013), 卷22 「賦役令」, p. 135. <舊2> “諸庸·調物, 每年八月上旬起輸, 三十日內畢. 九月上旬(自), 各發本州.”

25) 쉬푸젠, 「吐魯番出土的兩份唐代法制文書略釋」, 『敦煌吐魯番文獻研究論集』第2輯, 北京大學中國中古史研究中心編(北京: 中華書局, 1983), p. 555. 李錦綉도 여기에 동의하였다. 李錦綉, 『唐代財政史稿』第二冊(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p. 16.

26) 김택민·하원수 주편, 『天聖令 譯註』(혜안, 2013), 卷22 「賦役令」, p. 137. <舊3> 夾註 “江南諸州從水路運送之處, 若冬月水淺, 上埭(灘)艱難者, 四月以後運送, 五月三十日納畢.”

27) 『通典』 食貨10 漕運, p. 221. “開元十八年, 玄宗問朝集使利害之事, 宣州刺史裴耀卿上便宜曰. …(중략)… 本州正月二月上道, 至揚州入斗門, 即逢水淺, 已有阻礙, 須停留一月以上. 三月四月以後, 始渡

각된다. 다른 행과 달리 16행의 “…准” 뒤에 여백이 있다. 오쓰 도루는 석문 17행의 첫 글자로 “勅?”이라고 보완했는데, 투루판문서 실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앞줄의 여백을 감안 하여 행을 바꿔야 하는(平出) 단어인 ‘勅’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03 一 雇運庸調百姓雜等，先盡部內防閑庶
 04 僕邑士。如無卽通州縣百姓雜職及捉
 05 錢令史。此家無人力不堪，雇運任通
 06 百姓，不得因茲遞相假冒。其公廩及
 07 官人并官人親知並不得假冒。相知容其雇
 08 運。其庸調送向配所，應須防援差，隨近兵
 09 及百姓充。

용·조 및 잡채 등의 운송인력을 고용할 때는 먼저 관내의 방합, 서복, 읍사를 모두 동원한다. 만일 없으면 관할 주현의 백성잡직 및 착전령사를 … 한다. 이들의 관아에 인력이 없어 감당할 수 없으면 관할 백성을 고용하여 운송을 맡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서로 번갈아 하거나 허위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수 없다. 공해 및 관인, 관인 친지 역시 허위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수 없다. 고용한 운송인력의 용모 정보를 공유한다. 용·조를 배소로 보낼 때는 방원을 차출해야 하며 (방원은) 가까운 곳의 병사나 백성에서 충당한다.

용·조 및 잡채 운반 시 운송인력의 수급과 호송에 관한 지침이다. 운송인력은 우선 防閑, 庶僕, 邑士를 징발한다. 방합은 京師文武職事官 5품 이상에게, 서복은 경사문무직사관 6품 이하에게, 읍사는 公主·郡主·縣主·特封縣主에게 배속된 일종의 보조 인력이다.²⁸⁾ 만일 이들로 부족하면 주현의 百姓雜職 및 捉錢令史를 선발했다. 방합, 서복, 읍사, 백성잡직 및 착전령사 등을 통칭하여 ‘色人’이라고 한다. 이들은 과역을 면제받는 대신 공무, 관인 및 관청의 각종 업무를 수행했다. 뒤는 일부 글자가 결실되어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지만, 앞서 열거한 색인을 동원할 수 없는 경우 따로 운송인력을 고용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운송인력을 고용할 때는 지정된 사람이 소정 구간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허위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뒤에는 운송인력의 용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상은 운송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운송물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했던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公廩, 관인, 관인 친지 역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여기서 공해는 관청

淮入汴，多屬汴河乾淺，又船運停留。至六月七月後，始至河口，即達黃河水漲，不得入河。又須停一兩月，待河水小，始得上河。入洛即漕路乾淺，船艘隘艱，般載停滯，備極艱辛。計從江南至東都，停滯日多，得行日少，糧食既皆不足，折欠因此而生。”

28) 『舊唐書』卷43「職官」2, p. 1826. “경사문무직사관은 모두 방합이 있다. 주현관은 모두 백직이 있다. 주현관 및 외감관은 모두 집의가 있다. 친왕부속으로는 모두 사력을 지급한다. 품수는 백직과 같다. (凡京司文武職事官，皆有防閑。凡州縣官僚，皆有白直。凡州縣官及在外監官，皆有執衣。凡諸親王府屬，並給士力，具品數如白直.)”

『通典』卷35「職官」17, p. 966. “무릇 경사문무직사관 5품 이상에게 방합을 지급한다. 1품(96인), 2품(72인), 3품(48인), 4품(32인) 5품(24인). 6품 이하에게 서복을 지급한다. 6품(5인), 7품(4인), 8품(3인), 9품(2인). 공주(에게는) 읍사(를 지급한다.)(80인), 군주(60인), 현주(40인), 특봉현주(34인).[凡京司文武職事官，五品以上給防閑：一品(九十六人)。二品(七十二人)。三品(四十八人)。四品(三十二人)。五品(二十四人)。六品以下給庶僕：六品(五人)。七品(四人)。八品(三人)。九品(二人)。公主，邑士(八十人)。郡主(六十人)。縣主(四十人)。特封縣主(三十四人).]”

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산이다. 당대 각 관청의 운영경비, 인건비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배속된 자산, 즉 토지(公廩田)나 금전(公廩本錢)을 운용하여 확보하도록 하였다. 공해본전의 운용을 담당하는 이가 바로 앞에서 언급된 작전령사이다. 당의 제도는 관이 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데, 운송에 관 또는 관인의 참여를 배제한 것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防援은 호송 지원 인력을 의미한다. 관물의 운송, 죄수 이송 시 방원을 배치했다.²⁹⁾

10 一 諸州所煞虫狼賞, 請准一年所須之數, 以庸

11 調及折租物留納本州. 須數從多, 不得過

-----[儉] (봉배서)

12 五十段, 隨須給付.

모든 주는 호랑이나 이리를 죽였을 때 상으로 1년치 수요분에 준하여 용·조 및 절조물을 본주에 남겨두도록 한다. 수를 헤아려 양만큼 주되 50단을 넘을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

각 주에서 맹수를 제거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상 관련 지침이다. 여기서 ‘虫’은 ‘大蟲’, 즉 호랑이로, 당대 고조 李淵의 조부 李虎의 이름, ‘虎’의 피휘자로 추정된다. 『당육전』 虞部郎中 조에는 “만약 호랑이·표범·승냥이·이리의 해로움이 있으면 사시의 금기에 구애받지 않고 함정 만드는 것을 허락하며 잡으면 상을 주는데 대소의 차이를 둔다. (맹수가 있는 곳이면 구덩이·올가미 등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고 잡아서 바로 관에 가져오면 한 마리마다 견 4필을 상으로 준다. 표범 및 이리를 죽이면 한 마리마다 견 1필을 상으로 준다. 만약 牧監 안에서 승냥이를 잡아도 역시 한 마리마다 견 1필을 상으로 준다. 새끼의 경우는 각기 (견) 반 필을 상으로 준다)”³⁰⁾는 규정이 있다. 목감에서의 포상은 기준을 달리하였는데, 본 탁지주초에도 따로 조문을 두었다(18조, E’10~D’03). 州는 포상 재원으로 용·조 및 절조물에서 1년치 수요분만큼 남겨둘 수 있었다. 포상은 죽인 수만큼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지만 50段은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상으로 수여하는 賜物을 헤아릴 때는 ‘段’을 사용한다는 규정³¹⁾에 따라 여기서도 단위를 단으

29) 김택민·하원수 주편, 『天聖令 譯註』(혜안, 2013), pp. 493-494. ‘獄官令(구5조)’ “(죄수를 이송할 때)(지나가는 지역마다) 갈마들며 방원을 차출한다. (방원은 모두 건강한 자를 충당한다. 그 밖에 방원을 차출해야 하는 경우도 모두 이에 준한다.)(便移配處, 遞次防援. 其援人皆取壯者充, 余應防援者, 皆準此.)”

『通典』 卷168 「刑法」6, p. 4349. “대벽죄를 집행할 때는 모두 방원과 함께 집행장으로 이송한다. 죄수 1인당 방원 20인이며 죄수가 1인 추가될 때마다 5인을 더한다.(諸決大辟罪, 皆防援至刑所. 囚一人 防援二十人, 每一囚加五人.)”

기요하라노 나츠노, 이근우 역주, 『영의해 역주』(세창출판사, 2014), pp. 62-63. “무릇 외국 사신(蕃使)의 출입, 죄수 및 군사물품의 전송 시 방원에 필요한 인력은 모두 헤아려 소재지 병사를 차출하여 체송한다.(蕃使出入, 傳送囚徒及軍物, 須人防援者, 皆量差所在兵士遞送.)”(번역 일부수정)

30) 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上(신서원, 2003), pp. 682-683. 卷3 「尚書戶部」 度支郎中, “若虎豹豺狼之害, 則不拘其時, 聽爲檻奔, 獲則賞之, 大小有差.(諸有猛獸處, 聽作檻奔·射窠等, 得即於官, 每一賞絹四匹. 殺豹及狼, 每一賞絹一匹. 若在牧監內獲豺, 亦每一賞絹一匹, 子各半匹.)”

31) 김택민·하원수 주편, 『天聖令 譯註』(혜안, 2013), 卷23 「倉庫令」, pp. 213-215. 〈舊15〉 “무릇 사물에서 10단을 기준으로 할 때, 견 3필, 포 3단, 면 4단을 비율로 한다.(諸賜物率十段, 絹三匹·布三段·綿四屯.); 〈舊16〉 “무릇 잡채를 하사할 때 10단을 기준으로 사포(사포) 2필, 주 2필, 능 2필, 만 4필을 기준으로 한다. (諸賜雜綵率十段, 絲布二匹(工)·紬(納)二疋·綾二匹·縵四匹); 〈舊17〉 “무릇 번객에게 금채를 하사하는 경우, 10단을 기준으로 금 1필, 능 2필, 만 3필, 면 4단을 비율로 한다.(諸賜

로 표기했다. “五十”의 “十”은 아래 절반 정도만 남아 있어 ‘千’일 수도 있으나 내용상 ‘十’으로 판독하고 해석했다. 포상 물품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급하게 했다.

- 13 — 潞澤二州所料細好調麻納京及東都. 擬
 14 遣東布供進者, 請取水色明淨無節(節)■(類)
 15 皮薄片長窄(罕)細者.

노주·택주 두 주에 조로 부과한 품질 좋은 마는 경[장안]과 동도로 들인다. 포(東布)를 만들어 진상할 것은 맑은 물색에 실마디가 없는 것으로 두께가 얇고 길이가 길며 짜임이 세밀한 것을 골라 보내도록 한다.

潞州都督府와 澤州의 調 납부 규정이다. 노주는 隋의 上黨郡으로 618년 노주로 개명하고 시기에 따라 大都督府, 都督府로 승강하였으며 택주는 隋의 長平郡이었다. 모두 河東道에 속한다. 당 전기 調는 향토에서 생산하는 식물로 납부했는데, 지역에 따라 비단(능·견·시)을 내는 주(蠶鄉)와 포를 내는 주(布鄉)로 구분했다. 『唐六典』 권3 尚書戶部에 “무릇 물품 가운데 정교한 것과 생산지가 가까운 것은 어용에 공급하고(司農寺, 太府寺, 將作監, 少府監 등에 물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 가운데 좋지 않은 것과 그 생산지가 먼 것은 군용에 공급하는데, 모두 그 지역의 원근, 시기, 수량, 질을 헤아려서 그 업무를 통괄한다.”³²⁾고 하였다. 당대 포는 품질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노주와 택주의 포는 모두 4등급으로 상급이었으며³³⁾, 위치도 동도와 가까웠다. 본 조항은 중앙정부가 품질 좋은 포·마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16(01) — 1(□)番(蕃)客料, 今路次州, 准一年應須數, 取
 17(02) 正義倉充. 如其不足, 以折租物充, 不得浪
 03 破庸調.

… 번객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재 노정에 있는 주가 1년 필요한 수량에 준하여 정창과 의창에서 취해 충당한다. 만일 부족한 경우, 절조물로 충당하되 용·조에서 함부로 덜어내 쓸 수 없다.

제16, 17행은 투루판 문서(72TAM230:46/1)와 연결된다. 투루판 문서가 기공개되었지만 결실 부분이 많아 본 문서의 확인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번객’은 외국사신을 말한다. 당은 외국사신이 방문하면 입국 이후부터 출국까지 숙소, 식료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본 조문은 이때 필요한 비용의 재원을 규정한 것이다. 사신이 오가는 교통로 상의 주는

番客錦(綿)綵率十段, 錦(綿)一疋·綾二匹·縵三匹·綿四屯.)”

32) 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上(신서원, 2003), p. 347. 卷3 「尚書戶部」 “凡物之精者與地之近者以供御(謂支納司農·太府·將作·少府等物.), 物之固者與地之遠者以供軍(謂支納邊軍及諸都督·都護府), 皆料其遠近, 時月, 衆寡, 好惡, 而統其務焉.”

33) 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中(신서원, 2005), pp. 639-640. 卷20 「太府寺」 “견과 포는 각기 생산되는 지역이 있고 종류마다 품질에 우열의 차이가 있다. 견은 8등으로 구분하고 포는 9등으로 구분하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며 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한다. …(중략)… [택주, 노주, 심주의 자(貲: 세마포)는 모두 4등이다.][凡絹·布出有方土, 類有精粗. 絹分爲八等, 布分爲九等, 所以遷有無, 和利用也. …(중략)… (澤·潞·沁之貲, 並第四等.)]”

먼저 1년치 소요액을 정창과 의창에서 취한다. 正倉은 租를 수납한 창고이다. 義倉은 地稅를 수납한 양곡 창고다.³⁴⁾ 만일 부족한 경우는 조로 수납한 물품(절조물)으로 충당하게 하였으나 용·조의 수취분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사신의 접대 비용에 재화(견·포)의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조치로 생각된다.

3. 「당상원연간 서주창조사안권 위고창현신송도주위사용설가전사 (唐上元年間 西州倉曹司案卷 爲高昌縣申送逃走衛士庸縹價錢事)」

국립중앙박물관은 시신갈개에서 탁지주초 외에도 문서 잔편 2매를 추가로 수습하고 각각 2020NMK2:1[도3 상단], 2020NMK2:2[도4]로 편호했다. 탁지주초 잔권이 자리(葦席)의 한 면 전체를 덮고 남은 부분을 반대면 사방에서 접어 올린 형태로 배접되었다면, 이 잔편의 배접 방식은 자리의 너비에 맞게 안권에서 재단한 다음, 잔편을 90°로 틀어 붙였다는 차이가 있다. 2매 모두 문서 전면에는 자리에 눌린 흔적(이하 자리흔)이 직선의 띠 형태로 남아 배접 방식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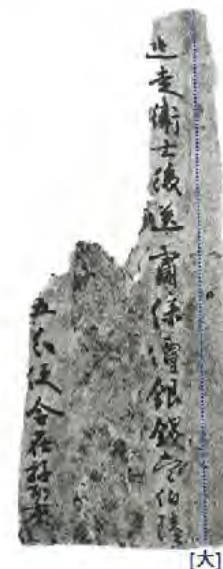
본래 시신갈개의 출토지인 아스타나 230호묘에서는 탁지주초와 구분되는 문서로 자리흔이 있는 잔편 2매가 수습되었다. 중국 투루판 문서 정리조는 이 문서를 72TAM230:62[도5]와 72TAM230:63[도3 하단]으로 편호하고 「唐西州高昌縣史張才牒爲逃走衛士送庸縹價錢事」로 명명하였다.³⁵⁾



도3. 2020NMK2:1 + 투루판문서 72TAM230:62 + 72TAM230:80/4-10 (재단선, 接縫部와 押署 표시)



도4. 2020NMK2:2 (재단선 표시)



도5. 투루판문서 72TAM230:63 (接縫部와 押署 표시)

34) 隋文帝 때 처음 설치했고 당 628년(정관2) 戴胄의 상언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의창에 수납하는 지세는 정세인 조·용·조와는 별도로 각호별 토지면적을 수록한 장부인 靑苗簿에 근거하여 1무당 2승을 징수하였다. 의창의 설립 취지는 흉년 시 賑貸를 위한 것이었으나 위의 조문에서도 볼 수 있듯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지방정부의 지출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비용 처리는 이후 의창의 재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新唐書』卷52「食貨」2, p. 1352. “太宗 때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하여 흉년과 기근에 대비하였으나 고종 이후 점차 의창의 곡식을 빌려 다른 비용에 지급하다보니 신룡연간(705~707)에는 대략 소진되었다. (自太宗時置義倉及常平倉以備凶荒, 高宗以後, 稍假義倉以給他費, 至神龍中, 略盡.)”

35)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武漢大學歷史系, 『吐魯番出土文書(圖文本)』(肆)(北京: 文物出版社, 1996), p. 85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에 수습한 문서와 투루판 출토문서 잔편 2매가 동일 안권의 일부였다는 것과 함께 2020NMK2:1과 72TAM230:62, 72TAM230:80/4, 72TAM230:80/9, 72TAM230:80/10이³⁶⁾ 하나로 접합되는 것을 확인했다[도3].

그 결과 한국과 중국에 분산된 7매의 문서 잔편은 모두 시신갈개에 배접되어 있던 것으로 본래 ‘재단된 종이 3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서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본 안권은 본래 당 上元年間(674~676)에 西州都督府의 倉曹司가 “도주한 衛士(府兵)의 庸縹(庸으로 내는 棉布) 가격에 상응하는 銀錢을 高昌縣이 납부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일련 문서이다. 衛士는 당 전기 府兵制의 근간을 이루는 병사로 지역 折衝府에 소속되어 상변, 정행, 진수의 임무를 수행했다. 상변은 京師 숙위 또는 도독부에서 仗內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거리에 따라 회수와 기간을 달리했는데, 서주의 위사는 서주도독부로 상변했으며, 500리 내 기준으로 5번(1번 30일)을 근무했다. 정행의 경우, 行軍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변을 면제 받았다. 진수의 업무는 변경 진수의 防人으로 3년간 1회 근무한다. 위사는 이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課戶의 丁에게 부과한 賦役(租·調·役·雜徭)을 면제받았다. 역은 연간 20일을 부과하지만 일이 없는 경우에는 庸[綾·絹·緹 3尺(布는 1/5을 추가)/日]을 내도록 했다. 여기서 ‘庸縹’은 역의 의무를 면제받은 위사가 상변 등 제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역에 상당하는 용을 부과하여 거둔 것이다. 위 문서는 고창현이 도주 위사의 용설을 은전으로 환산하여 징수한 뒤 서주도독부로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 과정을 담은 것이다. 따라서 명칭도 「唐上元年間 西州倉曹司案卷 爲高昌縣申送逃走衛士庸縹價錢事」(이하 도주위사 용설가전 안권)가 될 것이다.³⁷⁾

문서 3매는 좌우 끝이 재단선이며 중간이 결락되어 있어 상호 접속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각 문서의 내용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3매는 안권에서 상당히 가까운 부분에 있었을 것이다[별표2 참조]. 이하 도주 위사 용설가전 안권을 작성 순서에 따라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① 도주 위사의 용설가전을 서주로 납부한 내역에 대한 고창현의 보고 [72TAM230:63]

[전 결]

-----[大]-----
 1 逃走衛士後送庸縹價銀錢壹伯陸
 2
 3 五分便合在縣取 小豆價

[후 결]

도주 위사(에 대한) 후에 보내야 하는 용설 가격에 상응하는 은전(은) 106(문)

.....

..... 5분은 바로 합하여 현에 소두 가격으로 기장을 구입해 두었습니다.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문서의 성격이나 다른 문서와의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

36) 위의 책, p. 88.

37) 투루판 출토 문서의 문서명 「唐西州高昌縣史張才牒爲逃走衛士送庸縹價錢事」는 문서 전반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명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4~6행은 서주도독부가 파악한 내역(~3행)이 고창현의 신고 내역(“逃走衛士…者”)과 일치한다는 내용이다. 녹안의 끝부분인 2020NMK2:1+72TAM230:62+72TAM230:80/4·9·10의 제1행에는 작성자인 서주도독부 창조사 史 張才의 이름과 작성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한편, 2020NMK2:2의 제2행 “檢不到(검사해 보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의 오른쪽 여백에는 墨線이 있다. 이것은 判案의 결과가 집행(行判)되고 난 뒤 마지막 절차(結案)로서 문서 처리 과정에서 기한의 준수와 오류 여부를 검사하는 勾檢 과정에서 남긴 표식(勾勒)으로 보인다.⁴⁰⁾

③ 判官인 서주도독부 창조사 倉曹參軍 張元利가 해당 안건(①)에 대해 내린 1차 처결(首判)
[2020NMK2:1 + 72TAM230:62 + 72TAM230:80/4·9·10의 제2~4행]

2 高昌縣申送逃走衛
3 士 庸 緹 價 錢 . 檢 既 並 到 下
4 縣 宜 知 . 諮 . 元 利 白 .
-----[元]-----

[후 결]

고창현이 도주 위사의 용설 가격(에 상응하는) 은전을 보냈다고 신고했는데, 검사해 보니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현에 [첩문을] 내려 보내 마땅히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문을 구합니다. (창조참군인) 원리가 아립니다.

서주도독부 창조사의 判官인 元利가 안건을 심의한 뒤 1차 판정(首判)한 부분이다. 내용은 도주 위사의 용설가전을 송납했다는 고창현의 보고를 받고 실제 검사해보니 모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현에 통지할 것을 제안하며 장관(西州都督)의 비준을 요청한 것이다. 문서의 형식은 제2·3·4행이 나란히 오고 제1행보다 글자의 크기가 크고 자간도 넓다. 이것은 안건에 대한 심의(審案)를 마치고 조치의 결정을 아뢰는 判案의 형식이다.

제4행 말미에는 “자문을 구합니다. 원리가 아립니다(諮. 元利 白)”라는 판관의 상용구가 있다.⁴¹⁾ 그리고 제4행 좌측 접봉부의 뒷면에는 ‘원리’의 서명(押署)인 “元”이 있다. 여기서 ‘元利’는 투루판 바다무(巴達木) 207호묘 출토 「唐上元3年(676)西州法曹牒功曹爲倉曹參軍張元利去年負犯事」(2004TBM207:1-12)에 등장하는 倉曹參軍 ‘張元利’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⁴²⁾ 이 문서에서 확인 가능한 그의 재직 시기는 675년 7월 29일이며, 해직 시기는 676년 3월초이다. 따라서 본 문서의 작성시점도 동기간, 대략 상원연간(674~676)으로 비정할 수 있다.⁴³⁾ 제4행

39) 文은 銀錢을 헤아리는 단위이다. 국씨고창국 시기부터 銀錢의 단위를 文, 銅錢의 단위를 個로 불렀으나, 당대에 이르러서는 동전도 문으로 부르게 되었다. 王啓濤, 『吐魯番出土文獻詞典』(成都: 四川出版集團巴蜀書社, 2012), p. 1061.

40) 勾檢에서 문서 처리 일정에 대한 준수 사실의 검사(檢無稽失)는 錄事司의 錄事參軍이 담당하고 감사의 마무리인 勾訖은 녹사사의 錄事가 담당한다. 구검 제도의 구체적 운영에 대해서는 王永興, 『唐勾檢制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참조.

41) 종래 제4행의 “知諮”를 ‘보고하다’를 의미하는 한 단어의 판관 용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 王啓濤, 『吐魯番出土文獻詞典』(成都: 巴蜀書社, 2012), p. 1290. 그러나 이 해석은 “知”자 앞에 결락된 부분을 간과한 판단이다.

42) 榮新江, 李肖, 孟憲實 主編, 『新獲吐魯番出土文獻』上(北京: 中華書局, 2008), pp. 72-73.

43) 종래 이 문서의 중국 측 잔편 72TAM230:62, 72TAM230:63의 작성 연대는 開元9년(721) 전후로 막

이후에는 행을 바꿔 판관이 수판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결락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이후 진행되는 정무 처리 절차(判案의 通判과 批判, 行判, 結案)를 기록한 문안이 차례로 이어져 있었을 것이다.

4. 나오며

탁지주초는 당대 전기 재정사의 중요한 자료이다. 당대 예산 편성 절차, 재정 운용 지침 및 방향뿐 아니라 주초 및 지부의 실례로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문서행정 절차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조목은 당대 제도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항목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부분은 탁지주초의 앞부분으로 총 10개 조목에 해당한다. 이로써 새로 4개의 조문을 확인하였으며, 투루판 출토 문서와 접합하여 기존해석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확인한 것 역시 기존의 조문과 마찬가지로 여타 사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도주위사 용설가전 안권은 당대 부병제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부역 면제 대상인 위사가 군역을 수행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당률에 처벌 규정은 있지만 이처럼 용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출토문헌에서만 확인되는 바다. 특히 여러 잔편을 결합하여 하나의 안권을 복원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상 2종의 문서는 국내에 소재한 당대 관문서의 유일한 실례라 할 수 있다. 이번 공개로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혹 부족한 부분 및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연구로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연히 추정되어 왔다. 陳國燦, 『吐魯番出土唐代文獻編年』(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02), p. 230.

[별표1] 의봉3년탁지주초·의봉4년금부지부 각조의 내용

문서	조(연번)		내용	비고
	新	大津		
2020 NMK1:1	1		綾·羅 비용의 지출 처리	국립중앙박물관 본관3978
	2	1	桂州·廣州·交州의 庸·調 수납분 처리 지침	
	3	2	嶺南道 소속 주의 절납 양곡 수취분 보관 규정	
	4	3	桂州·廣州 소속 주 과세 수납분 처리 지침	
	5	4	교주交州의 군사비용 안배 지침	
5	4			
H'	6	5	調麻 양경 송부 시 운송비(運脚) 처리 지침	투루판문서 72TAM230:46/1(a)
	7	6	米粟 절납 관련 규정	
	8	7	용·조 납부 시 수운 관련 규정	
	8	7		
2020 NMK1:2	9		용·조 및 잡채 운반 시 운송인력 수급 및 호송 지침	국립중앙박물관 본관3978
	10		맹수를 죽인 자에 대한 포상 재원 관련 규정	
	11		潞州·澤州의 調 납부 규정	
	12	8	蕃客 비용의 재원 운용 지침	
	12	8		
H	13	9	布鄉의 絲綿 절납 허가 및 僦勾代輸 금지 규정	투루판문서 72TAM230:46/2(a)
	14	10	報蕃物 및 諸譯賜物 관계 규정	
	15	11	秦州·涼州 송납 규정 및 僦勾受顧 금지규정	

문서	조(연번)		내용	비고
	新	大津		
F'	16	12	秦州, 原州 등 세물 운송 및 저납 규정	大谷文書 1264, 2399
	17	13	용조 납입 수속 규정	大谷文書 1264, 4352, 1262, 1266 中村 5, 3
E'	18	14	牧監의 포상 재원 조달	大谷文書 1429, 1278, 1432, 1269, 1285, 1290, 1282, 1480, 1433, 1292, 1291, 2597 투루판문서 72TAM227:30/2
	19	15	諸王의 지방관(도독, 자사) 부임 시 추가 지급 내역 및 운용 규정	大谷文書 2597, 1263 투루판문서 72TAM227:30/2
D'	20	16	용조 안배 시 全輸, 半輸에 대한 처리 지침	大谷文書 1263, 1438
	21	17	지방 재정 운용 관련 지침 (計帳이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 등)	大谷文書 1698, 1263
D	22	18	劍南諸州의 綾羅雜綵 생산 비용 처리 지침	大谷文書 2602, 1268, 1263 투루판문서 72TAM227:30/1
	23	19	본주에 남겨둔 절조물을 상공할 경우, 脚錢(운송비) 처리 지침	大谷文書 1291 투루판문서 72TAM227:30/1
E	24	20	隴右道 凉州, 秦州로의 용조 송납 관련 규정	大谷文書 1480, 1290 투루판문서 72TAM227:30/1
	25	21	판독 불가	大谷文書 2603, 1279, 1296, 1262, 1301
	26	22	서북 지역 및 諸州 牧監 소용 재원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비용처리 지침으로 추정)	大谷文書 1301, 1262, 4352
F	27	23	布鄉의 용조 납부 규정 *儀鳳元年十二月勅에 따름	大谷文書 1300, 2399, 1264, 1440
G'	28	24	잡용 비용의 錢納 허가 규정	大谷文書 1263

문서	조(연번)		내용	비고
	新	大津		
G'	29	25	牧監의 지출 및 회계 규정 (소속 노비 의량 지급, 포상 비용 등)	大谷文書 1263, 2400, 1272, 1435, 1443, 1286, 1424, 4153, 1263, 1273, 1299, 2397, 1473
A'	30	26	劍南諸州庸調의 伊州 및 瓜州로의 송납 규정	大谷文書 2597, 1926, 2587
	31	27	輕稅의 회계 규정	大谷文書 1433, 3165, 1267, 1429, 1293
	32	28	兩京諸司 雜折綵 운용 지침 (수요 파악 및 지출 관리)	大谷文書 1429, 1293, 1289, 1274, 1262, 1265 中村 2
	33	29	計帳 처리 규정 (검사, 項帳 작성, 처리 기한 등)	大谷文書 1262, 1277, 1281, 1264, 1035, 1425 中村 2, 1
	34	30	秦·夏·原·鹽·嵐 등 주 牧監 庸物 지급 규정	大谷文書 1264, 1263, 1698, 1272, 1698
B'	35	31	雍州 諸縣 및 諸州 投化胡家 징세 규정	大谷文書 1424, 1698, 1302, 1488, 2602
	36	32	少府監 雜綵 진상 관련 지침	大谷文書 2597, 4018, 4356, 2602
	37	33	比部 회계감사 관계 규정	大谷文書 2597, 1275, 1274, 1265, 1292A,, 2603, 3884, 1425B, 1284, 1295, 1277, 1441AB, 4300, 1434, 1292B 中村 4
C'	38	34	용조 송납 규정(기한 및 처리 지침)	大谷文書 1292B, 1444A, 2398, 1434, 1425, 1271, 4355, 1430, 1300, 1276
	39	35	응급상황 발생 및 庫物 부족 등으로 이상의 지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집행 지침	大谷文書 1425

[별표2] 상원연간 도주위사 용설가전 안권의 내용

순서	내용	작성자	문서		비고
결락					
①	도주 위사의 용설가전을 서 주로 납부한 내역에 대한 고창현의 보고(牒文?)	高昌縣 縣尉(判官) 추정 大?	투루판문서 72TAM230:63		立案
결락					
②	처결을 위해 해당 안건(①)을 정리한 錄案	西州都督府 倉曹司 史(主典) 張才	국립중앙박물관 2020NMK2:2		審案
결락					
②	처결을 위해 해당 안건(①)을 정리한 錄案	西州都督府 倉曹司 史(主典) 張才	투루판문서 72TAM230:80/4, 72TAM230:80/9	투루판문서 72TAM230:62	審案
③	해당 안건(①)에 대한 1차 처결 (首判)	西州都督府 倉曹司 倉曹參軍(判官) 張元利	국립중앙박물관 2020NMK2:1 투루판문서 72TAM230:80/10		判案
결락					